

2022년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2. 12.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목 차

I .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근거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 중점사항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5
II . 감사 수감기관	...	6
III .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총괄	...	7
가. 시정·처리요구사항	...	8
나. 건의사항	...	44
다. 기타(자료 제출 등)	...	50
IV . 특기사항	...	57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요청의 건)		

2022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22. 11. 2(수) ~ 11. 15(화), <14일간>
- ※ 제315회 정례회 기간 : 2022. 11. 1(화) ~ 12. 22(목), <52일간>

3. 감사 중점사항

가. 안전총괄실(안전총괄관) 및 산하 도로사업소(6)

(1) 안전총괄실(안전총괄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건설분야 주요계획 수립,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부지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지하도상가 관리 및 지하도 상가 정책에 관한 사항
- 도로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에 관한 사항

- 도로포장에 대한 연구·기술 지원 및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유지관리 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등

(2) 도로사업소(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시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의 보수 및 도로굴착 관련 포장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 제설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일반시도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 교통신호기·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 및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나. 소방재난본부

- 소방행정,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유지,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 물순환안전국 및 산하 물재생센터(2)

(1) 물순환안전국

-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 물순환 정책, 수질 보전, 토양오염 방지,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지하수·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 풍수해 대책, 하천·유수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조정 관련 사항
-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중량 및 난지물재생센터

- 하수 처리 공법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오니처리시설(탈수시설 포함)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분뇨·정화조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오니케익 재활용 및 부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등

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교량·치수시설·하수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등

마. 기술심사담당관 및 산하 사업소

(1) 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심의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에 관한 사항 등
- 기술개발 계획수립·조사·연구와 기술직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 공사 품질관리·안전관리 지도계획의 수립·점검에 관한 사항

(2) 품질시험소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시험기준 선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시험에 관한 사항
- 계량기 검정 및 검사, 택시미터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등

바. 서울기술연구원

-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연구원 조직 구성 및 운영 실태
- 연구원의 자체 주요사업 추진 실태
- 예산현황 및 결산결과 잉여금 활용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처리시설(하수, 슬러지, 분뇨, 차집관로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재이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물산업클러스터 관련 시설 중 공단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된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내 기타 부대시설(체육시설, 주차장, 사택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송 도 호	·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의사지원팀장 고은미
부위원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김 용 호 박 철 성	· 전문위원 진현우 · 입법조사관 박남권 · 입법조사관 심현보 · 입법조사관 권혁일 · 입법조사관 정민선
위 원	국민의힘 " " " " " 더불어민주당 "	김 길 영 김 춘 곤 김 형 재 남 창 진 박 성 연 이 상 욱 정 진 술 한 신	· 입법조사관 김성연 · 행정6급 유은아 · 행정7급 김시환 · 행정7급 최수정 · 관리운영7급 공혜정 · 정책지원관 임태정 · 정책지원관 윤주이 · 정책지원관 박진수 · 입법지원관 박희석 · 입법지원관 박진희
			※ 속기요원(2명) 음향 및 녹취요원(1명)

II . 감사 수감기관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소관부서)
11월 2일(수) ~ 11월 4일(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	-	-
11월 7일(월) 10 : 00	기술심사담당관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회의실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품질시험소 ○기획조정본부 ○기술개발본부
11월 8일(화) 10 : 00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회의실	○수변감성도시과 ○치수안전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2개) ○경영기술본부 ○물재생운영본부
11월 9일(수) 09 : 30	소방재난본부	▶ 현장확인감사	
	물순환안전국		
11월 10일(목) 10 : 00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회의실	○총무부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11월 11일(금) 10 : 00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회의실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예방과 ○안전지원과 ○현장대응단 ○소방감사담당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 특수구조단 ○소방서(25개)
11월 14일(월)	자료정리	-	-
11월 15일(화) 10 : 00	안전총괄실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회의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과 ○안전지원과 ○건설혁신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6개)

III .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합 계	280	178	32	70
안전총괄실 (도로사업소 포함)	68	47	7	14
소방재난본부	32	24	0	8
물순환안전국	56	30	12	14
물재생센터	16	12	2	2
도시기반시설 본부 (시설국)	56	34	5	17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포함)	25	15	6	4
서울기술연구원	27	16	0	11

※ 특기사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요청 4건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178건

[안전총괄실·도로사업소] — 47 건

1. 지정된 업체에 수의계약한 의혹이 있고 제대로된 품질검증 없이 안전성이 미흡한 마스크 구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바 과거 마스크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며 안전총괄실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옥외 지진대피소인 학교운동장이 보안상의 이유로 문이 닫혀있는 바, 지진발생 시를 대비하여 이를 시정할 것.
3. 올해 가양대교 투신시도는 12건으로 가양대교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자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 가양대교에 자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4. 안전난간 설치 및 관리는 안전총괄실이나 한강교량 CCTV 및 감지기 관리는 소방재난본부로 자살방지시설 관련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한강대교 투신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할 것.
5. 가양대교 보도 폭이 좁고 난간 높이가 낮아 추락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6. 안전총괄실 공사장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국토부 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고발생 현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자료제출 시 누락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
7. 동절기 안전정책과 관련하여 결빙안내 등과 같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사전 예측 시스템 도입할 것.
8. 자치구 재난 발생 시 현재 재난이 발생한 자치구에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나 재난 전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9. 학교 주변 및 통학로 사거리 교차로에 있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상의 도로표지병과 횡단보도 상의 도로표지병 설치를 확대할 것.
10.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과 관련하여 자치구에 예산 배정 후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극 확인하고 점검할 것.
11.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져 가로등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 다수 존재하는바 가로수와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할 것.

12. 아스콘 밀도가 낮게 시공되어 아스콘 알갱이가 떨어져 나가고 이로 인해 균열이 심해진다는 시민의 제보가 있었으며 이 외에도 불량 도로포장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도로포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13. 도로 품질관리를 위해 겨울철 도로포장은 지양할 것.
14. 서울시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방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시행 또는 계획중인 바 서울시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
15.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PC콘크리트 패널에 시공상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끝부분의 콘크리트 파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시공 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
16. 현재 도시안전기본계획에서는 재난 발생 시 담당 실국에서 재난을 총괄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총괄하여 통제하고 수습하도록 소방이나 경찰 등에 강력한 권한을 주는 컨트롤체계를 만들 것.
17. 재난 발생 시 실무자 현장 파견, 교통 통제, 재난 알림 등의 위기 대응 체계를 세분화하여 도시안전기본계획을 구축할 것.

18. 영동대로 북단 고가차도 철거의 경우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바, 현재 추진중인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과 연계하여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
19. 불량맨홀 정비사업의 1순위업체가 부적격업체로 적발되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적격심사 중 부적격업체 적발 시 후순위업체와의 계약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
20. 최근 폭우 폭설이 증가추세인 바, 이에 대응하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
21. 재난발생 시 민첩하게 대응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방안을 강구할 것.
22. 서울시 노후고가의 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
23. 서소문고가의 개축이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노후화가 심각함에 따라 사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보수할 것.
24. 청년층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월소득 기준이 없어 월 소득이 높아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나 '월 소득이 높은 청년층이 아닌 건설일용근로자'는 사회보험료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보이는 바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25.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취지에 불부합하거나 계획 미흡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자치구가 일부 있는바, 자치구에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것.
26. 성내유수지교 하부구조물 점검통로는 시설물 손상 방지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야 하나 출입구 잠금상태가 불량한바, 신속히 점검하고 조치할 것.
27. 성내유수지교 보행로 콘크리트 바닥면이 파손되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바 조속히 보수할 것.
28. 성내유수지교 종점부 교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한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주변은 잡목들이 뿌리를 내려 구조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바, 잡목 제거 등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실시할 것.
29. 성내유수지교 대부분의 배수구가 토사로 막혀있어 우천시 노면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바퀴에 수막이 형성되어 정지거리가 길어지고 추돌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바 배수구 유지관리를 철저히 실시할 것.

30. 오륜교 차도와 보도 사이에 경계석만 설치되어 있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31. 방이고가 내 잠실에서 거여동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로 전면에 대형교명주가 있어 후면의 차량보호 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인바, 교명주를 다른 형태의 안전한 시설물로 교체를 하거나 제거할 것.
32. 방이고가교 상부 교면 방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부 노면에서 침투한 빗물로 인해 하부의 교량 슬래브에 백태현상이 발생한 바, 교면방수가 완전하지 않은 슬래브의 표면보수 공법 적용을 신중히 검토할 것.
33. 서울시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바, 기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컨트롤타워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34. 서울시재난상황실과 소방의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할 것.
35. 120 다산콜센터도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인 대책본부에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6.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재는 운영 시기를 장마와 제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여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7.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이번 이태원 사고 대응시 작동하지 않았던 바, 유사한 재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을 신속히 정비할 것.
38.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방법과 교통관리용으로 설치된 8만대의 CCTV를 서울시가 재난관리에 활용하도록 통합운영 플랫폼을 구축할 것.
39.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노선은 학여울이 아닌 대치우성아파트에서 종료되는 바, 각 사업설명 시 노선구간을 변경할 것.
40.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당초 공법이 몇 차례 변경되어 공법 적용에 혼선이 생김으로 인해 공사추진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예산 낭비가 발생한 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41. 지난 8월 폭우 이후 도로 지반이 약해져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싱크홀 발생을 대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것.
42. 한강교량 중 CCTV가 미설치된 교량이 다수인바, 미설치 교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CCTV를 설치할 것.

43. 올림픽대로 내 동부간선도로 수서램프 진입차량으로 지정체가 심각한 바, 현재 실시하는 타당성조사는 때늦은감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
44. 주최자가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계획이 도시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현재 진행중인 3차 도시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포함시키는 등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45. 구일고가 철거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할 것.
46. 서울시민에게 실제 필요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강구할 것.
47. 디지털정책관에서 관장하는 서울도시실시간데이터를 안전총괄실에서도 사전 연계, 이용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할 것.

[소방재난본부] — 24건

1. 지하주차장에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감지기, 스프링클러(SP)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설치된 소방시설만으로 화재진압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바, 시민안전을 위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비 소방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현재의 화재 발생 현상은 과거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 신규임용자는 물론 기존 재직자들도 특수 유형의 화재 사고에 대비한 실화재 훈련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실화재 훈련장이 갖추어지지 않아 관련 훈련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화재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화재 훈련장’ 건립을 적극 검토할 것.
3.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59건에서 ‘재난출동’ 중 발생한 사고가 78.0%로 가장 높으며, 그중 ‘구급출동시’ 발생한 사고가 212건으로 59.1%, ‘24세~35세’가 165건으로 46%, ‘소방사’계급이 141건으로 39.3%, ‘운전경력 5년 미만’에서 280건으로 6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차 운전애 앞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운전경력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운전연습장 건립을 적극 검토할 것.

4. 이태원사고 당시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인파 통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소방차에도 현장대응용 휴대용 확장기를 비치하여 위급 상황시 원활한 주변통제를 실시토록 할 것.
5. 1963년 창단된 119청소년단은 현재 서울 109개소 3,555명이 활동 중에 있으나 서울시내 유치원이 932개소, 초등학교가 610개소, 중학교가 390개소, 고등학교가 321개소인 점을 감안할 때 활동인원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됨. 어릴 때부터의 안전교육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자산이므로 119청소년단 활동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할 것.
6. 소방드론의 활용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하나, 고장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장발생 원인을 보면 ‘조작미숙(33%)’으로 나타나는바 드론 교육이 사용자별로 다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
7.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운영실적을 보면, 잦은 오류가 발생하여 설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바,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점검과 관련 회의 등을 실시하여 시스템 정상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 할 것.

8. 화재 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해 예산과 소방력 낭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대형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할 것.
9. 화재현장 출동 중 감지기 오작동이 확인되면 단순 확인에만 그치지 말고 감지기교체와 조치방법을 관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토록 하고, 1년에 2회 이상 비화재보 출동이 발생한 곳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할 것.
10. 한강안전시스템에 설치된 CCTV카메라를 살펴보면, 과거에 설치된 카메라(2015년)나 최근에 설치된 카메라(2021년, 2022년)나 화소수가 200만 화소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저성능장비가 최근 시설에도 설치된 사유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 할 것.
11. 응급실 환자 거부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등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을 강구하고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재정비를 추진할 것.
12. 건축물 내 소방시설로 설치되는 급기댐퍼에 별도의 장치가 설치되어 오작동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바 실제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능상의 이상유무를 철저히 점검할 것.

13.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본 시설물이 소방시설로는 분류가 되지 않아 소방점검대상 시설물이 아니기는 하나 상인들 입장에서는 동일 장소에 중복적인 소방시설의 설치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점검 방안을 강구할 것.
14.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시킨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되나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바 예산확보 및 편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
15. 이태원 사고 수습에 참여한 소방대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염려되는바 긴급심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등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 할 것.
16.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소화약제(가스계) 자동소화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에 실패했던 상황을 보았을 때 추가적인 소방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과거 가스계 소화설비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있었던 만큼 철저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17.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되어 현재까지 약 4만 3천 대가 설치되었고 운영성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나 관리가 부실한 사례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8. 소방시설점검과 관련하여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보고서 접수 및 처리 방식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19.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속히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
20. 화염 등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포함되지 못하는 항목이 있는 만큼 직원들 수요조사 등을 통해 추가 항목을 반영할 것.
21. 전통시장 등과 같은 장소에 매설식 비상소화장치를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만큼 관리 소홀 및 잦은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22.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과 관련해 건수 대비 실제 포상금 지급 건수가 저조한 상황으로 신고포상제 운영 및 대시

민 홍보활동 현황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앱 등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23. 불법건축물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바 소방시설 점검과정에서 적발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청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추적관리 할 것.

24. LPG가스를 사용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우 여전히 폭발 및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개선정책 추진을 통해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물순환안전국] — 30건

1. 신월 빗물 저류배수시설의 경우 시공사 선정 후 수리모형실험 하면서 설계가 변경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바 '23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인 대심도 빗물 저류배수시설 추진 시에는 수리모형실험을 사전에 시행하여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조경석 철거 및 하상정리, 저수호 안공 하상정리 증가 등의 사유로 당초 공사비 대비 50%이상 증액된바 이는 설계가 부실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추후 유사사업을 추진할 때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물순환안전국 추진 총 41개 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39%의 예산이 차년도(2023년도)로 사고 이월될 예정인데, 이처럼 예산현액의 39%나 되는 금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된다는 것은 예산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사고이월을 초래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4. 25개 자치구에 총 860개소 총연장 25,509m의 공공하수도

가 사유지에 저촉하고 있으나 점용료 지급 또는 공공하수도 이설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공공하수도가 사유지에 저촉하거나 점유하였다면 점용료를 지급하거나 이른 시일 안에 공공하수도를 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5. 물재생센터 계면측정기 구매와 관련하여 현장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특정업체와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조치하여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6.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전문가 구성이 조례와 다르게 구성되고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민협의회 운영 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
7. 물재생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기화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품별 최적의 보관방안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할 것.
8. 서울시 관내 하수관로 준설과 관련하여 자치구가 제출한 설계량과 실제 준설량의 차이가 커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오차가 적은 과학적인 준설 설계량을 산출 방안을 배양할 것.

9. 한강유역환경청이 서남물재생센터 방류수에 대해 오염총량제 BOD 수질기준 초과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물재생센터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수질검사방법 개선 등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0.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예측프로그램의 신뢰성, 정확도를 검증하고, 오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11.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공사 사업에 별건의 GIS DB구축 사업을 편성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편법 집행으로, 의회 예산 심의권을 다소 침해했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12. 2022년 내부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바 원칙에 따른 인사, 업무에 따른 보상, 업무 공정성 및 투명성, 직렬 별 배분을 세심히 살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13. 향후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공사 과정에서 강남역 일대 유입구, 유출구 등 공사 시행 시 주민 반발, 집단 민원이 예견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반대 민원 대응 방안, 공사 추진 시 유입구 및 공사현장 부근 주민

인센티브 혜택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14. 물재생센터 약품 구매와 관련한 서울시 감사에서 특정업체 선정 청탁이 확인되어 2명이 파면되고 3명이 해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바 약품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직원 공직기강 및 청렴도를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할 것.
1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채용실태에 대한 서울시 감사에서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나타난바 인사·채용과 관련된 규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물순환안전국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상위기관으로서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것.
16. 물재생센터 시설물 노후화가 심각한바 노후 시설 개량 등 안전관리 분야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등이 우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17.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를 외부에서 건조 처리하는 경우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이 많으므로 절차를 준수하여 가급적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8. 집중호우 또는 폭우 발생 시 물재생센터를 대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가상시나리오를 가지고 연구하여 예상되는 피해 및 용량한계, 그리고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19. 서울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갑작스러운 풍수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률 증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0. 시민 참여형 폐수배출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의 점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바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21.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의 예산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와 지역 내 저지대 지하주택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업비가 편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22. 내수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빗물받이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근본적으로 빗물받이 쓰레기 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빗물받이 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호우시 빗물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3. 직영인 물재생센터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물재생센터의 사택 운영기준이 상이하여 상대적으로 민간위탁 중인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에 대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

24. 2004년부터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정화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25. 물재생센터에서 수처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등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대체가능한 친환경 소독제를 검토하여 사용할 것.
26. 침수취약가구 돌봄공무원 서비스의 경우 침수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선정되어 신림동 반지하 사고와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바 침수지역지역 전수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것.
27.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 기준에는 없으나 약물 관련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민 보건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방류수의 약물 농도를 줄일 수 있는 수처리방안을 모색할 것.
28. 물재생센터별로 운영 중에 있는 주민편의시설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9. 서운로 저지고지수로 정비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됐다면 이번 침수피해 저감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 기간 중 집중호우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30. 침수취약지역 내 저지대 지하주택가 CCTV에 비상방송설비(스피커)를 함께 설치하고 하천범람이나 집중호우 시 경고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12건

1. 물재생센터 계면측정기 구매와 관련하여 현장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특정업체와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조치하여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 물재생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기화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품별 최적의 보관방안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할 것.

3. 한강유역환경청이 서남물재생센터 방류수에 대해 오염총량제 BOD 수질기준 초과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물재생센터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수질검사방법 개선 등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서남, 탄천물재생센터 내 사택에 직원 또는 직원의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거주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5. 물재생센터 약품 구매와 관련한 서울시 감사에서 특정업체 선정 청탁이 확인되어 2명이 파면되고 3명이 해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바 약품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직원 공직기강 및 청렴도를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할 것.
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채용실태에 대한 서울시 감사에서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나타난바 인사·채용과 관련된 규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물순환안전국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상위기관으로서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것.
7. 물재생센터 시설물 노후화가 심각한바 노후 시설 개량 등 안전관리 분야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등이 우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8.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근무형태와 연장근무 수당 등에 대해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바 이의제기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할 것.
9. 수방기간 전 빗물받이 청소를 자치구 자율방재단과 협력하여 추진할 경우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내수 침수 피해 예방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사항 검토할 것.
10. 2021년 입사자와 2022년 입사자간 임금 기준이 상이하여 문제가 발생한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기간, 경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평한 임금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1. 물재생센터에서 수처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등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대체가능한 친환경 소독제를 검토하여 사용할 것.
12. 물재생센터별로 운영 중에 있는 주민편의시설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것.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34건

1. 월드컵대교 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바, 공사장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2. 월드컵대교 가교설치 공사 중 사용한 작업배(폰튼)는 무게중심 이동을 고려하지 않았고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추후 가교공사 재개 시 작업배(폰튼)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 또는 다른 방법의 작업 방식을 검토할 것.
3. 월드컵대교 가교설치 공사현장에서 수동식 구멍조끼를 착용하였으나 익사사고가 발생한 바, 공사장 근로자에게 자동식 구멍조끼를 지급 등 수상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4. 월드컵대교 가교설치 공사중 발생한 사망사고 발생 요인을 추 정해볼 때 작업 수단 검증, 작업자의 안전 장구 착용 등에 대해 감리자, 발주자 모두 소극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 되는바, 향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모든 공사 수행 시 감리자, 시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수행할 것.
5. 공사현장에 설치된 CCTV 중 일부만이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송출되고 있어 공사장 사고 발생 시 이를 신속히

인지할 수 없는바, 공사장 내 CCTV를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과 신속히 연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

6.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불법재하도급이 지적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외 추가 의혹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감사위원회에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전반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할 것이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7.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와 같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공사 중 설계변경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
8.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할 것.
9.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부실에 대한 벌점이 부과되었다가 다시 취소되는 등 숨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건설공사의 부실사항에 대한 벌점이 객관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10.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비가 설계단계에서 반영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설계 변경으로 반영한 현장이 다수 파악된바, 전자
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시 반영할
것과 각 건설현장의 운영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11.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는 추가설계 부
분을 발주자가 계약하지 않고 시공사와 설계자 간 계약을 체
결토록 하는 편법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바 편법 설계변경이 발
생하지 않도록 근절할 것.
12. 건설정보시스템에 각종 공사 준공도면이 누락된 자료가 78%
이상인바, 서울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준공도면 입력
을 철저히 할 것.
13.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신
속히 협의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
14. 공기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액되고 있
는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업 추진 시 사전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보다 철저한 사전점검과 준비를 거쳐 착수할 것.
15. ‘신청사 건설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결국
사업비 증액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인해 수백억
의 예산이 낭비되었음. 설계 부실로 예산낭비가 발생한 바 추
후 이같은 사례를 반면교사삼아 면밀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16. ‘올림픽대로 남단IC 연결램프 구조 개선공사’ 실시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바 공사장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
17. ‘올림픽대로 남단IC 연결램프 구조 개선공사’는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도로와 공사현장 입구가 맞닿아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공사장 연결부를 개선할 것.
18.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가 현재 중지되어 설계를 재실시하고 있으므로 시공안전성이 높은 방안을 강구하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할 것.
19. 특정제품 선정심의위원회의 일부 심의 및 평가위원의 정보가 현행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 운영풀을 공정하게 관리할 것.
20.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실시계획’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21.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부정확한 자료가 포함됨에 따라 자료의 신뢰성의 문제가 보여지는 바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제출할 것.
22.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당시 계획되지 않은 난지한강공원 조성이 포함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상당수 발생하고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진바 공사계약 이후 다수의 설계변

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할 것.

23.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중 시공사의 설계변경 제안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공사비 단가에 낙찰율 대신 협의율 적용 부분이 시민감사로 환수처분되어 시공사와의 소송이 진행된 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변경 시 지방계약법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24. 건설공사장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는 법으로 의무 규정하고 있는바, 미설치 현상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
25.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시스템 도입 방안 강구할 것.
26.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중 공사와 전혀 무관한 '양화대교 하상 잔재물 처리 용역'을 실시하는 편법 설계변경을 이루어진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7. 공무원 직접감리제를 실시함에 있어 인력충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28.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사업의 출입구 위치가 정체지역에 위치한바 시계에 가깝게 위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것.

29. 공무원 현장 직접 상주 실시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 및 인력 확보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는바 대책 마련 후 실시할 것.
30.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완료 후 개장되었으나 시공 하자가 다수 보여지는바 공사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을 철저히 할 것.
31.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는 지하 암반으로 인한 장비 고장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특정공법심의위원회에서 공법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이 드는바 공법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
32. ‘신림공영차고지 조성공사’의 안전난간이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3.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추진일정이 변동되지 않도록 계획된 예산을 편성하여 면밀히 사업을 추진할 것.
34. 서울시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방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시행 또는 계획중인 바 서울시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15 건

1.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내부위원이 비공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신기술·특허 적용현장의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불시점검 시행과 점검현장 수를 늘리기 위한 인력보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2.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으므로 추후 온·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의무 점검 기간이 곧 도래할 예정이나, 품질시험소는 아직 수리재검정을 위한 인력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위한 선제적 준비 방안을 마련할 것.
4. 현재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로 인해 많은 발주기관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서울시에서도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5.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강의 실적 및 성과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4급 이상의 공무원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서울시에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신월빗물배수터널을 참고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할 것.
7. 품질시험소 청사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8. 서울시 공사현장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계획중인 공무원 직접감리제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9. 서울시가 택시미터기를 애플미터기로 전면 교체하기로 발표하였으므로, 품질시험소는 유휴 검정인력 활용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사용량 감소가 예측되는 검정장비들의 활용 및 불용처리 방안을 강구 할 것.
10. 건설공사 시공평가 및 건설기술용역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만점을 받은 평가 항목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등 평가점수를 신뢰할 수 없는바, 보다 투명하고 정밀한 평가가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 기술심사타당성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적정 건수가 0건이 나온바,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절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

12. 공무원 직접감리제 추진에 따른 임기제 감리공무원의 급격한 증원으로 인해 감리공무원의 검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므로 이를 보완 할 것.
13.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특허관련자가 각종 심의에 참석할 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으므로,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14.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의 최근 3년간 실적이 전무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사후 평가보다 선제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동점검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5. 전기자동차 충전기 재검정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검정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검정기기의 조기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서울기술연구원] — 16 건

1. 연말정산을 외부용역(회계법인)등에 의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나친 외주화를 자제하고 내부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여 연구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 서울기술연구원 「인사규정」에 ‘성범죄 결격사유’ 항목이 없어 성범죄 사항에 대한 확인 없이 채용한 사례가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바, 향후 서울기술연구원 「인사규정」 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직원 채용 시 성범죄 사항을 포함한 결격사유 확인을 철저히 할 것.
3. 개원 후 현재까지 수해와 관련하여 총 12건의 연구를 수행했는데 연구 결과가 서울시 정책 등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바, 선제적 연구 및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서울시 기술정책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4. 서울연구원과 연구 분야가 중복되어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으므로 기술연구원만의 명확한 연구 분야를 확립할 것.
5. 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가 서울시 정책을 지원하지 못하고 연구원 혼자만의 성과가 된다면 인력, 예산, 시간 낭비

로 이어지는 만큼, 서울시 정책실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연구를 추진하길 바랍.

6.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되어 사용자에게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의 내외부 제보 및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감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근거하여 적절히 처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7. 계약 관련 공고일보다 계약이 먼저 체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것.
8.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에 지적된 바와 같이 재물조사가 미실시되거나 누락 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무형재물 등을 포함한 재물관리에 더욱 철저토록 할 것.
9. 정원(108명) 대비 현원은 98명으로 결원율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바 서울기술연구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추진을 위해 정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10.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

11. 서울기술연구원이 ‘복지사각지대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연구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 침수 피해, 이태원 사고 등과 관련하여 더욱 다양한 선제적 연구 및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연구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12. 현 연구원장 취임 이후 기술연구원이 상당한 연구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서울연구원과의 통합문제에서는 동등한 기준의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바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고 통합과정에서 기술연구원 역할, 직원 처우 등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토록 할 것.
13. 서울기술연구원장의 관용차 사용,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등에 대한 부정적 사용과 직원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며,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 필요한 조치를취하도록 할 것.
14. 연구 추진 세부 내역을 보면, ‘서울시 침수지도’ 등의 연구가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하는 ‘침수예측시스템’사업과 유사하여 예산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만큼, 기술연구원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 市 유관부서, 서울연구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구가 중복하여 수행되지 않도록 하고 기술연구원만의 차별

화되고 독보적인 연구를 추진할 것.

15. 최근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등 서울도 지진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기술연구원 조직개편안을 보면 지진 안전센터가 폐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국책연구기관에서 서울시 환경을 고려한 연구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진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할 것.
16. 합리적인 내부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다면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좋은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나. 건의사항 32건

[안전총괄실 · 도로사업소] — 7 건

1. 주최자 없는 시민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 위원이 발의한바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조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2. 이태원 사고 관련하여 발의된 안전 관련 조례 2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검토할 것.
3.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총괄실장은 시장의 공관 사용을 건의할 것.
4. 민간공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5.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작하는 각 지역 재난안전지도 제작을 검토 바람.
6. 안전총괄실은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공간정보담당관에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바, 각 시스템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7. 다중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사 도로에 핸드레일 설치와 같은 보행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물순환안전국] — 12건

1. 개화 육갑문 공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보완 대책 마련해주기 바람.
2. 현재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고 있는 물순환안전국 업무추진사항 및 보도자료를 최소 1~2일 전에 미리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주기를 바람.
3. 물재생센터 노후장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나 타 사업 대비 후순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 난지물재생센터의 노후화 및 악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주기 바람.
4.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의 기획, 설계, 공사, 운영 단계별 분석을 통해 3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5. 대심도사업TF팀에 전문가 그룹을 추가적으로 구성해줄 것.
6. 직원 사기진작 및 안전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물재생센터 사택 정비를 추진해줄 것.
7. 물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기 근무 중인 직원, 시·구 물 관련 직원에 대한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8. 서울물재생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 관람을 활성화해주시기 바람.
9. 도림천 인접 자치구별 치수 분야, 수목식재 분야 예산 투자 규모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치구에 공평한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10. 난지물재생센터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슬러지 소각시설 노후화 문제, 주변 택지지구 도로를 통해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운반차량의 진·출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11. 현재, 물재생센터 부지 내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축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등)의 이용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등의 시설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체 시설물 이용 신청을 유선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람.
12. 복개하천인 봉천천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부족 및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연장이 절대 발생 되지 않도록 할 것.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2건

1.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 기준에는 없으나 약물 관련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민 보건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방류수의 약물 농도를 줄일 수 있는 수처리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2. 서울물재생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 관람을 활성화해주기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5건

1.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에서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유지 보수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한바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2. 사토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사토운반량의 정확한 산출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송장관리시스템을 확대 도입할 것.
3. 다수의 공사장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함에 따라 간접비 또한 증액되어 시공사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간접비 증액은 불가피한 것임에 따라 소송이 아닌 다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4. 부실벌점부과위원회와 벌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형평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원, 교수 등의 외부위원이 아닌 타 지자체 공무원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정체지역인 테헤란로(역삼역~삼성역)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도록 건의 바람.

[기술심사담당관] — 6건

1.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의 미이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그 사유가 교육시간 조정 등에 따른 것인지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공기적정성심의 관련 상위법이 개정된지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이 지연된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3. 서울시 건설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표창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건설인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4.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심의위원으로 임명되어 있는 도시안전건설위원 중 심의개최 연락이 누락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주기 바람.
5. 계약금액순회점검반을 4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누락되는 기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주기 바람.
6. 친환경제품의 도입을 장려해야 하므로, 각종 위원회 심의평가시 친환경제품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안 등을 강구해주기 바람.

다. 기 타(자료제출 등) 70건

[안전총괄실 · 도로사업소] — 14 건

1.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통과하여 지출된 내역 중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세부내역 제출.
2. 최근 3년간 YJ코퍼레이션, ENW, 테크윈시스템 등 3개 업체와의 마스크 체결 내역 (제품명, 금액, 수량 등),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3. 한강교량 CCTV 현황
4. 가양대교 시범용 CCTV 및 감지기 설치 현황
5. 재난과 관련하여 언론에 방송을 요청했던 사항
6. TBS에 재난 관련 방송을 요청했던 내역
7. TBS에서 이태원 사고를 인지한 시간, TBS의 재난 관련 방송 실시시간 내역
8. 재난상황 4단계 발령 등으로 TBS 방송이 재난방송으로 전환된 시간
9. 녹색 버스중앙차로 사업 추진 재검토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보고할 것.

10.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청담대교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결과보고를 제출할 것.
11. 서울시에 설치된 투수 보도블럭의 제품 현황(재질, 단가 등) 제출
12. 22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구매한 방역물품에 대한 현황 제출 (제품명, 구매수량, 회사명, 계약내용 등)
13. 서울시에서 비축하고 있는 방역물품 관리현황 및 유통기한이 만료예정인 방역물품 사용계획 제출
14. 서울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제출

[소방재난본부] — 8건

1. 고층건물(롯데월드타워) 소방훈련 현황
2.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상 오류로 보고되는 사항
3. 한강교량 CCTV 화소 등 전반적 현황

4. 제연설비 설치대상 민·관 합동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
5. ‘이태원사고’ 관련 참여 소방공무원 대상 긴급심리 지원 운영 실적
6.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체계 세부 기준
7. 안전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사업
8. 전기차 화재 진압방법(3가지) 장·단점

[물순환안전국] — 14건

1. 물재생센터 하수처리량,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
2. 대심도 빗물터널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공고 관련 자료.
3. 물재생센터 계면측정기 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
4. 자치구별 하수관로 준설공사 설계량 산정 방식.
5. 2013년 당시 대치역 침수대책 결정과 관련하여 조사 용역 결과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명단.
6. 내부청렴도 개선(향상) 대책.

7.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 대응 방안.
8.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기본계획 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종료 후 관련된 자료 일체.
9.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운영 분석 보고서.
10. 대심도사업TF팀 전문가 그룹 구성안.
11. 맨홀추락 방지시설 제품선정 절차 및 현황, 자치구별 맨홀추락 방지시설 설치 현황.
12. 중량물재생센터 노후 악취방지시설 교체와 관련하여 제품 현황, 악취저감 효과 등에 대한 검토 자료.
13.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예측시스템 용역 관련 자료(착수, 중간, 최종 보고서 포함).
14. 침수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보고서 형태로 제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2건

1. 물재생센터 하수처리량,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
2. 물재생센터 계면측정기 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17건

1.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관련 각 점검 현황 및 출장 내역 제출.
2.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현황 제출.
3.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업무 실적 제출.
4. 공무원 건설공사 현장 직접 상주 시범운영 개요 및 현황 제출.
5.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중 ‘탄천동로 지하화’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구간 세부자료 제출.
6.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관련 도급사와 하도급사와의 계약서 제출.

7.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관련 (주)효명이씨에스의 특허를 비엔지이엔씨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8.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관련 공법심사 심의위원 명단 제출.
9.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감사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 제출.
10.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감사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 결과 제출.
11.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폰톤의 현장사용 승인 관련 자료 제출.
12. 신림-봉천 건설공사와 관련된 민원 16건 내역 제출.
13. '평창동 미술복합공간 건립공사'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설치 정산 내역 제출.
14. 최근 3년간 대형공사장 감리사의 근무실태 위법 적발 및 조치 현황 제출.
15. 건설공사장 감리사 근무실태 강화방안 제출.
16.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는 공공조형물 설치로 인한 설계변경과 공사 지연이 발생한바 공공조형물 설치가 이루어졌던 배경 및 진행과정 제출.
17.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및 현황 제출.

[기술심사담당관] — 4 건

1. 22년도 공기적정성 심의내역
2. 300억 이상 대형 공사장 현황
3. 건설신기술심의 내역 및 위원현황
4. 설계변경 횟수 및 변경금액 상위 10건에 대한 사유 및 내역

[서울기술연구원] — 11 건

1. 대리기사 비용 청구내역
2. 관용차량 운행일지
3. '22.4.1.~10.30. 카드사용내역
4. 광역단위 노후 건축물 기술개발 관련 채용계획 등 내부결재 문서
5. 혁신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6. 2022년 채용 관련 심사위원 명단
7. 연도별 기술연구원 실적
8. 연도별 용역 수행내역
9. '19.6월 이후 정관변경사항 내역
10. 성범죄 관련 인사규정 개정 내역
11. 핫라인 접수 세부내용 및 사건조치 후 경과내용

IV. 특기사항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의 건

2022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 제한적인 감사기간과 감사권한 등으로 인해 사안의 실체를 모두 파헤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다음 4건에 대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임.

1.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매 시 허위견적서, 특정업체 특혜 의혹 등 부적정 수의계약의 건

1) 주문내용

코로나-19 발생 직후 서울시 안전총괄실에서는 마스크 구매를 하면서 허위견적서에 의한 구매를 하거나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가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적의 조치해 줄 것을 청구함.

2) 피감사기관 : 안전총괄실

3) 이송처 : 서울시특별시(감사위원회)

4) 붙임 : [붙임 1]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11.15) 해당 속기록(김용호 부위원장 질의답변 내용)

2. 서울기술연구원장의 관용차 및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부적정 사용 의혹의 건

1) 주문내용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기술연구원장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고 관련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가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적의 조치해 줄 것을 청구함.

2) 피감사기관 : 서울기술연구원

3) 이송처 :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4) 붙임 : [붙임 2]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11.7) 해당 속기록(정진술 위원 질의답변 내용)

3.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 주요 공종 문제점에 대한 재조사의 건

1) 주문내용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중 남·북단 성능

개선공사의 'PC 바닥판 제작·설치공사' 공종을 시행하면서 하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시행한 의혹에 더불어 재하도급 업체가 폐업(세무서 직권) 중임에도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의혹이 있으며, 잦은 공법 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는바,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 뿐만 아니라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전반에 대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가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적의 조치해 줄 것을 청구함.

2) 피감사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3) 이송처 : 서울시(감사위원회)

4) 붙임 : [붙임 3]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11.10) 및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11.15) 해당 속기록(김길영 위원 질의답변 내용)

4. 4개 물재생센터에 만연한 슬러지 계면측정기 특정제품 선정 및 계약의 부적정 사례 건

1) 주문내용

물재생센터 슬러지 계면측정기를 선정함에 있어 2007년에 만들어진 특허를 2009년에 선정기준으로 삼은 뒤 현재까지 해당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보다 발전된 기술이 있음에도 경쟁을 유도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발주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동종 기술간 불공정 경쟁 문제, 계약의 부적정성 문제,

계약단가의 적정성 여부 등 특정기술선정과 관련하여 의혹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가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적의 조치해 줄 것을 청구함.

- 2) 피감사기관 : 서울특별시 4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탄천)
- 3) 이송처 :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 4) 붙임 : [붙임 4]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11.9) 해당 속기록(이상욱 위원 질의답변 내용)

[붙임 1]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11.15) 해당 속기록(김용호 부위원장 질의답변 내용)

○김용호 위원 용산구 시의원 김용호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밤 10시 15분경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8명 영령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다시 한번 더 표합니다. 또한 196명에 달하는 부상자 여러분께서도 빠른 쾌유와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시 현장에서 밤새 사상자 수습을 위해 피땀을 흘린, 눈물을 같이 흘려주신 또 헌신해 주신 소방관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시 한제현 2부시장님, 오신환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안전총괄실 최진석 실장님 이하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밤새 사고현장을 지키며 수습하며 여러 날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용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용산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난주 운명을 달리하신 서울시 안전총괄실 고 송중훈 안전지원과장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더 빕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020년도죠, 2020년도 3월경부터 서울시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의계약을 나름대로 잘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당시 마스크 구매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약 140억, 재난기금에서 약 300억에서 430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자금을 지출하기 위한 내역을 보면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발주처가 관련 업체를 조사해서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두세 개 업체를 받아서 비교견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죠?

그런데 다음 제가 조사한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한 가지를 살펴보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자료 하나 올려주세요.

2020년 2월 27일에 안전총괄실에서 받은 견적서입니다. 마스크 40만 개를 구매했는데 양산에 있는 블루인더스가 4억 4,000만 원 견적을 냈고 부산시에 있는 제일에스엔에스라고 하는 회사가 6억 6,000만 원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블루인더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강서도로사업소에서 마스크를 또 구매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고 또 다시 블루인더스라고 하는 회사가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블루인더스라는 회사와 제일에스엔에스라고 하는 회사는 부산과 양산에 있는

회사로서 이렇게 똑같은 회사에 안전총괄실에서 이렇게 구매를 한다는 점이 다소 의아스럽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잘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보면 2020년 2월 24일, 다 비슷한 시점이죠. 또 안전총괄실에서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그때는 안성시 양성면 소재에 있는 두 업체의 견적서를 받았어요. 그 회사가 와이제이코퍼레이션입니다. 그다음에 보개면에 있는 E&W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견적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이 2억 1,0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2020년 2월 24일에 발생했고 불과 10여 일 후에 2020년도 3월 7일에 다시 또 마스크를 구매했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견적을 받아서 또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이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사안을 볼 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철두철미하신 분들인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일한 견적을 동일한 회사에서 받아서 뭔가 지정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PPT에서 보신 자료를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볼 때 미리 업체를 정해놓고 그 정해진 업체가 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내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두 업체 간의 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안전총괄실에서 갖고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를 보면 특이하게도 금방 말씀드린 와이제이코퍼레이션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제품 온 것은 E&W가 왔단 말이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회사를 지목해 드린 게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같은 회사로, 회사 명의만 다르지 같은 데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다음 해외 마스크 구매 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0년 3월 9일에 또 안전총괄실에서 마스크를 54억 원어치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54억을 구매하는데 안전총괄실에서 비교견적도 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해 버렸어요. 물론 그때는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지만 54억 원어치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회사를 급조로 만듭니다,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3월 9일에 사업자등록을 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지금 PPT 자료 올렸습니까, 세 번째?

세 번째 PPT 자료를 보세요. 보시면 와이앤드제이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3월 9일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3월 20일 54억 원에 400만 장을 서울시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실 사업자 등록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여기 회사 주소지가 연립주택이에요, 일반 실적 있는 회사도 아니고. 아무리 그때가 코로나정국으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는지, 54억이라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런 회사를 차려서 원주에 그것도 연립주택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마스크 구매를 시도했던 말이에요. 물론 이 회사가 마지막 단계 재무에서 오케이

하고 돈이 나가는 단계에서 해외 태국이나 폴란드에서 마스크 수출제한이 걸려서 이루어 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것은 그런 단점이 없었으면 54억 원에 구매가 됐단 이야기지요.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했을까.

그리고 이런 마스크를 구매할 때 식약처 확인서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서울시 자체에서 완화시키라고 하는 공문도 보내고 하여튼 이 마스크에 관련해서는 이 당시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마스크를 실제로 구매한 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2020년 3월 25일입니다. 181억 원어치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181억을 구매하는데 테크윈시스템이라는 회사가 2020년 3월 25일 181억 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테크윈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살펴보니 자동화시스템 관련된 회사이고 마스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비교견적도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해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구매가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마스크 구매 특수조건을 살펴보니 나름대로 1,200만 장을 구매하면서 몇 가지, 총 4회에 걸쳐서 9개씩만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험을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마스크를 구매해서, 마스크를 그 당시 구매했으니까 썼겠지요. 과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잘 사용했겠지만 안전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서 모든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구요.

어쨌든 그 당시 서울시 안전총괄실의 문서를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품질검사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용한 시험성적서가 붙어있어요. 그 시험성적서가 나름대로 밑에 보면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약처의 성적을 하다 보면 6가지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검사하고 나머지는 다 면제를 시켰습니다.

해외 마스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품질검사도 없이 그 당시 긴박한 상황도 이해하지만 그렇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의혹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추후 감사청구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붙임 2]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11.7) 해당 속기록(정진술 위원 질의 답변 내용)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 송도호 잠깐만요.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말씀하세요.

○정진술 위원 제가 이따 오후에 질의를 할건데요 우리 서울기술연구원 원장님 관련해서 관용차 운행일지를 봤는데 허위로 작성돼서 저희한테 제출이 됐더라고요. 그걸 판단한 근거는 뭐였었냐면 운행일자, 차량 운행일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썼던 카드 결제 시간하고 안 맞더라고요. 예를 들면 퇴근하는 시간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해서 자료를 다시 요구했는데, 그거 포함해서 각종 업무추진비, 연구비 유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우리 담당 실장을 불러서 문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건 하나가 조금 부끄러워요, 6,000원짜리 식권까지 밑에 있는 직원 시켜서 직원들의 카드로 급게 해서 가지고 오고 그래서 했는데 이 와중에 들어서 공모를 하더라고요. ‘정진술 위원 JTBC 식권 10매 6만 원, 원장에게 식권 주기 위해 선결제한 내용 확인,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라 차량 운행일지와 업추비 카드 영수증 안 맞는다, 핵심은 선결제’ 선결제 맞아요. 이따가 내가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 우리 원장님이 업무보고 도중에 뭐냐 ‘이게 추정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 진술이나’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둘이 말 맞추기를 하는데 우리 기술연구원장님과 우리 김경민 실장 상당히 우리 행정감사에 앞서서 말 맞추기, 허위자료 제출, 의도적으로 지금 행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서 행감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행감에서 둘이 말 맞춰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기술연구원에 하는 질의 자체가 결국 저희가 애길 하면 둘이 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도안위 그리고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그리고 경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당장 정회를 할 사항은 아니지만 두 부위원장과 상의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우리 행감을 무력화시키려는 임성은 기술연구원장 그리고 김경민 실장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도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서울기술연구원 지금 대리 기사를 원장 관용차량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대리 기사업체에서 서울기술연구원으로 비용을 청구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km, 몇 시간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됐거든요. 그거 오전중으로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행일지 같은 경우 지금 전산상으로 PDF로 제출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수기로 작성된 운행일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부분)

○정진술 위원 서울기술연구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요청했는데 엑셀로 달라고 했는데 PDF로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서울기술연구원에 있는 카드 있죠? 2022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카드 사용내역 관련해서 엑셀로 제시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광역단위 노후 건축물 디지털 안전위치 기술개발 관련해서 채용계획 관련해서 내부 결재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의 채용계획하고 그다음에 변경됐던 내부 결재문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전에 요구했던 관용차 이용 그것 엑셀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네 번째로는 혁신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소속, 이름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만 확인을 할 테니까요 땡땡 처리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2022년에 채용됐던 사람들 심사위원 있죠? 그것도 땡땡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이름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원장님, 2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요청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파일 같은 거는 연구원에 있기 때문에요 이메일 받는 거는 어렵지 않고 여기서 받아서 USB나 이메일 같은 걸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2시까지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입니다.

김경민 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기획실장 김경민입니다.

○정진술 위원 지난 10월 21일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포함해가지고 운영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참석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거기에서 제시한 의견은 뭐였습니까?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저희 연구원이 서울연구원과의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한 안건을 제안을 받았고요.

○정진술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성한다고 의견 밝히셨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시 정책적…….

○정진술 위원 자, 들어보세요. 통합에 찬성한다고 의견 밝히셨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원장님 지시사항이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정진술 위원 그렇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기술연구원장님과 자체는 지금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 기술연구원 직원들 그리고 연구원들은 통폐합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 원장님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원장에 임명되셨네요,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경민 실장님.

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그 부분…….

○정진술 위원 오세훈 시장님 정책비서관 출신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4월에 오셔서 바로 통폐합 관련해서 별도로 회의도 하셨죠,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던데?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누구랑 회의를…….

○정진술 위원 외부인들하고 만나시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도 통합에 찬성을 하시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원장에 임명되신 거네요? 맞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진술 위원 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 기획실장이 공학박사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고서와 회의 시에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문과적인 센스가 부족한데요…….

○정진술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통합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그 회의록을 보시면요…….

○정진술 위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까 김길영 위원님이 질문 주셨을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혁신적 통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통합에 찬성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되시고 나서 관공비 업무추진비 한 달에 얼마씩이십니까? 월 200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본인이 쓰시는데 모르세요, 정확한 금액? 200만 원이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게 월별로 정해져 있다고…….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월 200 정도가 되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뭘 들었습니다입니까, 본인이 알고 계신 얘기인데.

관용차 지금 어떤 거 타고 계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이오닉5 전기차 타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는 운전기사가 있는데 기술연구원장님 지금 타고 있는 운전기사 없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대신에 대리기사 사용하고 계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그 대리기사업체 정상적인 업체입니까?

모르실 것 같으니까 김경민 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김경민입니다.

○정진술 위원 이 업체 지금 압류 중이죠?

팩트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압류 중이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정진술 위원 압류 중인 업체인데 그 압류한 대상이 국세청이고요. 국세청에다가 대리기사비를 넣으면,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국세청으로 지금 비용을 정산해주고 있죠? 그렇죠?

○연구기획실장 김정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비정상적인 대리기사업체를 사용하고 수의계약으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거 누구 지시로 이 업체와 연결하신 겁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해당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말씀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 대리운전업체가……. (뒤를 돌아보며) 압류 시점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정진술 위원 얘기들었어요. 계약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추후에 압류가 됐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업체는 당연히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재미있어요. 자, 제가 우연히 차량 운행일지를 봤는데 8월 8일에 서울시 폭우 피해가…….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8월 8일 폭우 피해가 있었고, 8월 9일 봤더니 우리 기술연구원장님이 용산에 있는 한 가게에서 저녁 늦게까지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업무추진비 시간하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일지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맞아요. 예를 들어 당초 제출했던 자료대로 봤더니 6월 16일 9시 47분에 중구에 있는 삼원일식에서 그런데 관용차는 10시 13분에 마포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고, 6월 17일 오후 8시 36분에 마포구에 있는 한촌설렁탕에서 업무추진비를 계산했는데 관용차는 오후 7시 39분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6월 20일은 관용차를 가지고 시청에서 자택으로 퇴근한 건데 41km가 찍혀 있더라고요. 이거 전체로 봤더니 다 부실합니다. 이거 허위로 작성한 거 맞죠? (자료를 살펴보이며) 이거,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 이거 허위로 작성한 거 맞죠, 차량 운행일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조금 설명…….

○정진술 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맞죠? 그것만 일단 인정하고 설명하세요. 허위로 제출한 내용 맞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작성한 직원은 지금…….

○정진술 위원 이거 누가 불러요, 대리기사 누가 부릅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부릅니다.

○정진술 위원 부르죠, 이 기사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자료 허위 맞죠? 인정하십니

까?

방금 직원이 아침에 했던 자료 해서 구체적인 원장 가지고 왔어요. 내용을 봤더니 정말 엉망이에요. 과연 대리 기사를 쓰는 이유가 비용 절감인지 아니면 기술연구원장님이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엉망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분석해야 되는데 받은 시간이 늦어서,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10월 21일 6시 18분에 기술연구원에서 안양시, 10월 21일 7시 15분에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중림동, 10월 21일 7시 15분에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길동, 10월 21일 9시 55분 광장동 육연타 본점에서 잠실, 10월 21일 11시 58분 광장동에서 길동.

연구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대리비 대신 내주셨죠? 대신 내준 거 맞잖아요? 이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10월 21일하고 24일하고 다 호출이 상암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보고 있는데요. 이날 저희 직원들 워크숍을 진행해서 저희 직원들 한 두 세 명 정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정진술 위원 그러면 광장동에서 잠실하고 길동 이걸 뭉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내용도 일행이 있어서 그 일행 부분을…….

○정진술 위원 아니, 육연타 본점까지 갔다가, 본인 아마 개인적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방금 해명대로라면 지금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우리 원장님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원장님, 골프 치세요? 이런 질문 죄송한데 골프 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치기는 합니다.

○정진술 위원 치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관용차의 목적, 사용 어디에다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다 해야 되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업무용이죠?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연구원장님, 이 관용차 사적으로 안 쓰셨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허위로 작성했고 지금 대리업체에서 온 자료도 틀려요. 민감한 부분 다 뺐어요.

원장님, 관용차 사적으로 쓰셨죠?

확실하게 하세요. 증인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답변을 하실 때는 고발 가능합

니다.

사적으로 쓰셨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사적인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진술 위원 아니, 두루뭉술하게 빠져나가시지 말고, 사적으로 쓴 거 인정하십니까?

사적으로 쓰신 거 맞으시냐고요. 지금 이 예의 대표적인 거 방금 받아서 대충만 보더라도 말이 안 돼요, 지금 사용한 내역이.

자, 들어보세요. 주말에 관용차 쓴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적으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주말에 사용을 제 개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정진술 위원 쓰신 적 없다고요, 그러면? 본인 차 사용하셨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주말에 사용하는 경우는 시청에 회의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가끔씩,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고 쓴 적 없다?

원장님, 골프 치신다고 하셨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석모도 일몰이 참 아름답습니다. 석모도 가신 적 있으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석모도 가보시면 거기에 참, 저도 석모도를 가서 일몰을 봤어요.

원장님, 유니아일랜드CC 아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관용차 타고 가셨죠? 인정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관용차 사적으로 사용하셨죠? 인정하십니까? 그 예 계속 다 델까요?

지금 제가 이 자료 다 갖고 있는데 공개하면 저희가 면책특권이 없어서 하는데 감사 때 다 제공을 할 겁니다.

유니아일랜드CC 9월 3일 토요일, 인정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은…….

○정진술 위원 인정하시냐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인천공항 출장이 있어서…….

○정진술 위원 인천공항 출장이 있어서, 9월 3일에 가셔서 1박 2일 유니아일랜드CC에서 골프 치시고 일요일에 유니아일랜드CC에서 인천공항 가셨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정진술 위원 자, 9월 4일 관용차 타고 갔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비용 자체를 우리 기술연구원 관련해서 원장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허위로 작성을 해서, 직원들이 뭘 죄가 있습니까, 원장님이 시키는데?

자, 이 업체, 9월 4일 1박 2일 유니아일랜드CC에서 골프 친 거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1박 2일 치셨고 그리고 석모도 유니아일랜드CC에서 인천공항까지 관용차 타고 가셨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자, 그런데 9월 4일 게 없어요, 돈은 지급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속아 넘기는 거고, 원장이 지시를 하는데 직원들 이거 거부할 명분이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금액을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4만 원, 5만 원인데요 그 당일 9월 3일 골프장 가는데 봤더니, 9월 3일 골프장 간 비용이 12만 원입니다, 대리비가. 4만 원, 5만 원이 넘는 게 부지기수예요. 12만 원, 18만 5,000원,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 15만 5,000원, 12만 원, 17만 원, 18만 원 대리 이 대리비는 연구원의 돈 아닙니까? 서울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이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자, 관용차 개인적으로 사용하셨고, 대리비 개인적인 용도로 쓰신 거 인정하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답변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게 지금 기사를 채용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 일단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제가 낮에 서울시청에 출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면 대리를 결국 네 번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비용을 계산, 첫째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12만 원이 1일 요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정진술 위원 원장님, 제가 그 대답하실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17만 원 딱 보면 오전에 5만 원 그다음에 12만 원, 16만 원 해서 25만 원이 나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언제…….

○정진술 위원 25만 원이 나간다니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언제 말씀…….

○정진술 위원 15만 5,000원 하고, 10월 6일 보세요. 세 번 하면 25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무슨 비용 아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원장님, 이 부분에 딱 있고요. 관용차 운행일지 허위로 작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것도 맞지 않고 사적 이용 인정하신 거고요.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할 게 뭐냐면 8월 9일이에요, 폭우 피해 때. 우리이스테이드로 결제가 돼 있더라고요, 와인바로 돼 있더라고요.

연구원장님, 여기 원장님 하실 때 누구랑 가셨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외부인사 저녁약속이 원래 선약이 되어 있어서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진술 위원 여기 원래 이름이 우리이스테이드는 아니죠? 명목상 상호고, 실제 이름은 어반000이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데라고 소문이 났던데?

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이날, 우리이스테이드 하는 게 뭐냐 하면 고독사 관련입니다. 7명이에요, 신고하신 게. 고독사 관련해서 폭우가 그렇게 내리는 날 8월 9일 9시에, 끝난 시간이 9시예요. 그때까지 거기 가서서 계산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고독사로 돼 있습니다. 자, 직원 7명인데요 계산을 뽑아봐도 안 나와요, 돈이. 거기 스테이크가 4만 5,000원이고요 기타 하더라도 7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원장님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구석구석에 사적 사용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원장님이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경찰이 아닌 이상 어차피 감사로 밝혀질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이스테이드, 어반000이죠? 우리 원장님 좋아하시는데 업추비 받으시죠, 200만 원씩? 그렇다면 당연히 그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받는 것은 아니고 카드로…….

○정진술 위원 카드를 쓰시면 당연히 우리 원장님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200만 원 내에서 최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직원들 카드까지 모두 건드시죠?

자, 8월 9일 우리이스테이드, 9월 5일, 카드도 다 달라요. 9월 8일, 9월 14일 다 가서 끊습니다. 쓰기는 원장님이 쓰는데 왜 원장 업무추진비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가 쓰이는 거죠?

김경민 실장님, 나오세요.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김경민 실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이거 결제 우리 실장님이 하셨는데요 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원장이 먹은 것에 대해서 외부인들 만나서 쓴 것에 대해서 연구비 카드라든가 기타 카드

쓰면 돼요, 안 돼요?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안 됩니다.

○정진술 위원 안 되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정진술 위원 이거 연구비 횡령이죠? 맞죠? 연구비를 연구에 쓰는 게 연구비 아닙니까? 해당자도 아닌 원장이 가져다 썼다고 하면 이거 연구비 횡령이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그 항목이 연구비…….

○정진술 위원 연구비 1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카드번호 뒤쪽 3959, 4007, 6579, 1759 각각에서 용도도 다 받았어요. 그중에 연구비도 있고요 기타 다른 실 것도 있어요. 이거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제가…….

○정진술 위원 (연구기획실장에게)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말씀해도 좋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외부인사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자리에 직원들이 동석하는 경우도 있고 동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식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원장님, 원장님. 이 직원들 쓴 카드 쓴 적이 없답니다, 본인들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카드…….

○정진술 위원 어차피 감사로 밝혀질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월 11일 업무추진비 봤더니 총무회계팀 업무보고가 있어요. 서울기술연구원 어디 있습니까? 마포에 있죠?

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서울기술연구원 어디 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상암동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상암동에 있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총무회계팀 업무보고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비스타 워커힐 서울 피자 힐입니다. 워커힐호텔까지 가서 총무회계팀 업무보고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은 제가 메모를 전해주는데 그건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거기 봤어요, 제가. 이름은 빼고 최OO, 하셨죠? 세 명이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한 분 누구십니까? 3명으로 기재하셨던데 한 명 누구죠? 그 한 분 채용과 관련된 분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채용과 관련된 분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에요? 한 분 누구세요, 그러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박OO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정진술 위원 박OO이 아니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까지 이어볼게요. 제가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공고하고 그거 하라고 했죠? 심사위원 중에 유OO, 전 국회사무처 보좌관이 있더라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네.

○정진술 위원 저는 인사위원회 할 때 연구원들을 뽑는데요 보좌관이, 저도 보좌관 출신입니다. 13년 동안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인사도 아니고 보니까 광역단위 노후 건축물 디지털 안전위치 기술개발, 그 보좌관 저도 아는 분이네요. 그런데 그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우리 원장님하고 관련이 있죠? 혁신발전위원회 위원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혁신발전위원이고요…….

○정진술 위원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 보좌관이 한양공대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건축물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임명된 3명 채용됐죠? 3명 채용됐죠? 그중에 두 분 우리 원장님하고, 이 3명 다 모르세요, 아세요, 두 분? 강OO하고요 그다음에 김OO 아세요, 모르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인지는 하고 계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강OO,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발주한 2017년 복식 고층 통한 전통행사 재연 연구에서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용역 수행하셨던 분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니요…….

○정진술 위원 들어보세요, 끝까지. 김OO, 2019년 서울시의회에서 발주한 서울특별시 시립 체육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같이 수행하셨어요. 맞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2017년도…….

○정진술 위원 맞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2017년도 부분은 연구 수행은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뉴스까지 나와서 보도자료 있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발주했어요. 서울시의회에서 발주해서 그 내용 언론 보도까지 다 됐고요, 했는데 지금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당시에 시의회에 재직하고 있었던…….

○정진술 위원 이 모 의원님이 발주하셨던 거고 1월 8일 이 모모 서울시의원 복식 고층 통한 전통행사 재연 연구 보고회 가져, 거기에서 우리 임성은 원장님 당시 서경대학교, 맞으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강OO 전문위원, 위촉위원이지요? 모르세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립 체육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하는 기초연구 같이 수행하셨죠? 그것까지 부정하실 겁니까? 인정하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앞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 모른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니, 앞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정진술 위원 같이 수행을 하셨고,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밝혀질 거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니, 앞부분은 시의회 직원으로서 함께 보고회를 하고 아마 사진 찍은 것을 시의원 쪽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돼서 아마 그렇게 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 보세요. 이거 제목이 뭐죠, 사업? 광역단위 노후 건축물 디지털 안전위치 기술개발이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실장님 계시죠?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생활환경연구실장 김민경 안녕하십니까? 김민경입니다.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 위촉연구원 할 때요 이런 주제라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인 거죠, 법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통상적으로?

○생활환경연구실장 김민경 네, 국가 R&D라서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법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 통상적으로 지금 했는데, 제가 다른 공고문을 다 봤어요. 그런데 법

제도해가지고 법학하고 행정학 하는 경우는 없죠, 이 기술 부분에서?

○생활환경연구실장 김민경 기술을 하면서 제도적인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과 행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당초에 이거 채용계획에 법 제도 없었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내부 결재 과정에서 법 제도 부분인데 두 분이 법 제도 부분 즉 법학하고 행정학 부분이죠? 맞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이요 있었습니다. 처음…….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들어보세요. 제가요 하셨던 거 확인까지 다 됐으니까요 제가 그 부분은 감사할 때 넘길 겁니다. 법 제도 두 분들 법학하고 행정학 맞죠?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감사를, 법학하고 행정학 해당 부분 맞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채용계획이 올라 왔을 때에…….

○정진술 위원 두 분 다 하시는 거고 지금 해당 하셨던 그 보좌관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고. 자, 보세요. 해당 책임연구원 몇 년생입니까? 30대 중반이죠?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들 40대가 넘어요. 저도 연구소에서 조교 생활을 했었고요 통상적으로 책임연구원 할 때 밑에 연구원들은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 넣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채용할 때도 해요.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했다는 말입니다. 두 명, 책임연구원에 비해서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는 이유……. 그런데 웬걸, 채용됐어요.

중요한 건 관용차,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다른 카드까지 사용하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원장님, 아까 저한테 제출하셨는데요 그 6만 원까지 어떻게 그 생각을 하세요, 원장님? 통합해서 없어지는 기관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다 꼬집어내려고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연구원 직원들은 통폐합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데 원장이라는 분은 통폐합에 관심 없고 관용차 사적으로 이용하고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기타비용까지, 그리고 뒤에 계신 김경민 실장님, 제가 보기에 우리 실장님도 이거는 지시를 받아서 하신 게 아니고 같이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김경민 실장님 거기에 커피 한 잔까지도 연구원 돈으로 계산한 거 보면서 도대체 이 연구원은 밑에 있는 연구원들은 정말 기술연구원 살려보려고 그렇게 뛰는데 위에 원장 이하 실장은 한 푼이라도 빼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정말, 이 기술연구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됐을까 참으로 암담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장님, 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우리 위원회 의결로 해서 서울기술연구원장과 김경민 실장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만으로도 이렇게 나오는데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감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서울시 할 거고 저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장님, 답변 기회를 좀 주시면…….

○위원장 송도호 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몇 가지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이 있어서 답변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먼저 채용 관련해서 이 부분이 국가 R&D 과제라고 해서 담당 박사가 위촉연구원 세 명을 채용하겠다고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원래 채용계획에 건축에 대한 자료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영역을 본인이 연구계획서에 수록하였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위촉연구원을 채용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결재일이 5월 31일인데요 제가 가서 한 달 이내의 시점으로 굉장히 초기 시점 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제도 개선을 어떤 부분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인력들을 채용을 하느냐고 확인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내용이 법률 개정안 이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공은 법이나 행정을 전공했던 사람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의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관용차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1박 2일 부분은 맞습니다만 1박 2일이 전체적으로 뒤에까지 그렇게 됐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일정이 전체적으로 일정은 3개월 전에 잡혀있어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딱 한 번 갔고요. 그리고 그다음 일정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일정이 있어서 루트가 가는 길이어서 그냥 잠시 들렀다가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진술 위원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9월 3일 가서서 9월 4일에 인천공항 가셨죠? 출국 어디 가셨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말레이시아 출장 다녀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9월 3일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말레이시아를 9월 3일에 가셨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9월 4일로 기억이 됩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9월 14일이거든요, 출장이. 출장일이 틀리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잠시만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또 나가셨다는 거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9월 3일에 가신 거 인정하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잠깐만요, 9월 3일은요 아까 9월 3일 12만 원짜리는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에 있어서…….

○정진술 위원 원장님, 그러면 유니아일랜드 언제 가셨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진술 위원 지금 자꾸 빠져나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송도호 자,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지금 우리 정진술 위원님의 감사 청구 요청이 들어와서요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원장님, 유니아일랜드CC 간 날짜 확인하셨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정도로 기억됩니다.

○정진술 위원 9월 17일, 18일부터 23일까지 말레이시아 출장가셨다는 거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일단 관용차 사적 사용 부분은 인정을 하셨죠? 아니, 골프장 가는데 관용차 타고 갔으면 그게 사적 사용이지, 어떻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원장님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자 내역들을 주셨는데요 너무 속도가 빠르게 여러 개를 불러주셔서 사실은 다 못 적은 부분들도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7일 관용차 사적 사용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공항가는 길이어서 이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사적 사용은 맞죠? 인정하시죠? 아니, 일요일에 공항을 가는데 전날 골프장 가면서 관용차를 이용했으면 그건 사적 사용이잖아요. 아니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한다고 보고요.

지금 조직개편 준비 중에 계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조직개편이요?

○정진술 위원 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조직개편안은 7월에 사실은 종료가 됐고요 지금 시와 협의가 늦어져서 이사회 일정만 앞두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직개편안을 본 느낌은 뭐냐, 세 차례에 걸쳐서 조직개편이 있었고 지금 4차 조직개편 하고 있는데요 서울연구원과의 통합을 고려한 조직개편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3개 실 도시전략연구실, 도시인프라연구실, 주거환경연구실, 서울연구원의 도시사회연구실, 도시경영연구실, 도시공간연구실, 도시정보실이 있는데 이게 연구실명만 보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미세먼지연구센터 1년 동안 운영되다 폐지됐어요. 그런데 3차 조직개편 때는 1인의 연구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센터를 폐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센터를 구성해 놓고 1인만 두고, 결국에 보면 마치 서울기술연구원의 장기적인 모습을 미래를 보면서 조직개편 하는 게 아니고 통합을 고려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 차별화를 뒤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수시과제 보고서 작성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옆에 뿌리고 계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그게 기술연구원이 할 사항입니까, 서울연구원이 할 사항입니까? 예를 들면 저희 마포에 광역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있는데 기술적인 내용도 아니고 정책적인 내용을 기술연구원에서 수시과제로 해서 발표를 해요. 기술연구원이 무슨 그런 역할까지 합니까, 정책까지? 기술과 관련되지도 않은 정책인데?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현안 검토라고 해서 연구 가기 전 단계에 있는 부분인데요 쓰레기소각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현안이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사례, 일본 사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서울기술연구원만의 연구를 하셔야 서울연구원과의 통폐합을 막을 수가 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할 사업들을 다 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조직 개편도 서울연구원과 유사하게 가면서 통합을 대비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연구원장님, 연구원장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관용차 사적 이용하고 업무추진비 끊어서 다 쓰고 그런 역할이 아니고요 서울기술연구원들의 연구원들 그리고 직원들을 대표해서 통폐합을 막아야 할 위치예요. 그런데 통폐합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사업하는 거 보면서 우리 원장님 어떤 의도로 원장을 맡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앞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답변시간을 좀 주시면…….

○정진술 위원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에 시간 드릴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기술심사담당관님, 우리 직접 감리제 추진하는 것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2안으로 해서 감리공단을 만드는 계획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직접 감리제를 도입한 이유가 뭐였죠? 전문성 부족, 업계 유착 등의 문제점 해소하고자 책임감리제 도입했었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전문성 부족 문제로 해서 직접 감리제를 도입, 아니 책임감리제를 도입했는데 이제 다시 직접 감리 들어가면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인원은 일단 기술적인 축적도 그동안 안 돼 있고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경험이 있는 임기제를 몇 명을 뽑아서 거기서 이제 새끼 치듯이 해서 직원들 기술능력을 올리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임기제로 해서 제대로 이렇게 기술력이 축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이 감리업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의 숙련 그리고 도제 관계처럼 위에 있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면서 이게 축적돼서 수십 년 동안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직접 감리제, 물론 성산대교라든가 그때 났을 때 알겠는데 잘못하면 업무 과중 그리고 전문성 부족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기 좋죠 공무원들이 직접 감리를 한다 괜찮네, 이런 생각인데 실제로 아직 역량이 안 됐다고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송도호 마무리 좀 해주세요.

○정진술 위원 네.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심의위원회 심의하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원들 제척이라든가 회피 사유 지정한 적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심의하기 전에 서약서를 받는데 거기에서 옛날에 해당 그 업체에 근무했다든지 이런 제척사항이 있으면 신고하고 빠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다른 특허의 공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자기 회사 공법으로 바꿔버려요. 이걸 좀 문제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건설심의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특정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 공법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책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우리 마포에 오다 보니까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동안, 연구기관도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 서울시라든가 관급자재 같은 경우 이렇게 할 때 친환경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친환경 제품에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미래세대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친환경 제품들을 최대한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평가를 할 때 친환경 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 평가점수를 준다든가 배점을 해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가 하면 저는 이런 자재를 제작하는 회사라든가 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에코 서울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가산점이라든가 친환경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수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장님, 조금 전에 답변 좀…….

○위원장 송도호 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우선은 조직 개편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고려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8쪽에 보면 조직 개편안이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직 개편안을 보면 저희가 굉장히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서 작성을 한 부분인데요 AIoT 그룹이라든지 빅데이터 그룹, 기술실증센터 이 영역은 서울연구원에는 아예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인프라연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직원들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연구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도시인프라연구실은 서울연구원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고, 왼쪽의 기초실이나 경영지원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조직이나 사실은 인사조직, 예산, 감사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연구실 부분에서 안전과 환경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주거환경연구실이라고 명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미진해서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투출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우리 기획실장이 혼자만 참석을 했습니다, 시에서 요청을 그렇게 해와서. 그 질의답변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시면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가에 대해서 “예.”라고 답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인정할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은 부적절하게 답변을 한 것 같다고 내부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잘린 부분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기획실장도 공학박사들이 정확하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아니다 하는 부분에서 딱딱 자르는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고, 앞뒤 질문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통합을 결정하면 이런 부분들을 연구원에서 받아들이겠느냐 찬성하느냐 이런 취지에서 “예, 찬성합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전체 앞뒤 맥락을 보시면 그 부분이

명확하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했으니까 하나만 좀…….

그러면 우리 원장님 통합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혁신적 통합을 요청을 했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서울연구원을 해체하고 해산하고 기술연구원으로 통합을, 기술연구원 법인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서울시에 제안을 지금 한 상태이고요.

○정진술 위원 옆치나 메치나 통합이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기술연구원이 생긴 지가 얼마 됐는데 장기간 돼 있던 서울연구원을 해체해서 기술연구원으로 통합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두 번째…….

○위원장 송도호 정리하세요.

○정진술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이 혁신통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직도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실은 바로 서울연구원에다 붙이면 돼요. 그리고 센터만 구분해서 따로 부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으로 하면 그냥 바로 붙여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를 어떤 고민과 뭘 있는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시는데요 실제 보이는 모습은 통합을 고려한 그거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다면 통합에 반대하시고요 통폐합에 대해서 막으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앞서…….

○위원장 송도호 자, 간단하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지금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전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보면 저희가 물리적인 통합 또는 통합을 위한 통합은 반대한다는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고요. 이게 어느 기관을 해체하고 어느 기관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주목적이라든지 설립 근거라든지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도 짧고 직원도 적은데 이 기술연구원의 요구 사항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를 서울시 관계부서나 간부들로부터 제가 수없이 많이 질문을 받고 있으면서…….

○위원장 송도호 네, 알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내용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붙임 3]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11.10) 및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11.15) 해당 속기록(김길영 위원 질의답변 내용)

가.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11.10) 속기록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성산대교 프리캐스트 바닥판 제작설치 공사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화엔지니어링 김덕구 대표님, 혜영건설 대표의 위임을 받은 홍용종합건설 이영록 토목사업부장님, 한신공영 이득복 상무이사님, 비엔지중공업 김익현 대표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도화엔지니어링 김덕구.

○홍용종합건설(주)토목사업부장 이영록 이영록.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한신공영 이득복.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비엔지이엔씨 김익현.

○위원장 송도호 앉으세요. 먼저 출석하신 증인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및 수감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임하는 증인 및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김길영입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불법하도급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 주신 것 중에 29번 내용 보면 균열의 기준이 있어요. 균열의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균열의 기준이 지금 현재 성산대교 상판 균열이 된 길이와 넓이하고 보통 철근 콘크리트 우리가 평범하게 인정해 주는 수치가 어떻게 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일단 균열에 대한 법적 기준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으로 국토부 지침이 있고요. 거기 안에 기준은 저희들은 0.3mm 이상이 구조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밀안전진단 결과 저희가 개수와 균열 길이와 균열 면적 그래서 면적당 비율까지 다 받아보니 남단, 북단 다 합쳐서 균열 길이가 1,136m 정도 되고요. 면적이 284㎡, 한 2.54% 정도…….

○김길영 위원 성산대교 공사 남단, 북단에 대한 전체 면적의 2.5%가 결국 균열이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성산대교 차량이 되게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그런데 균열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얼마 전에도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시민의 안전,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게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산대교 자체가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드릴게요.

남단, 북단 성능개선공사의 원도급사가 각각 어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원도급자가 북단은 해영건설 외 2개사고요 남단은 한신공영 외 1개사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북단이 성능개선공사를 먼저 했나요, 남단이 성능개선공사를 먼저 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북단이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북단 건설관리용역을 발주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업인데 그러니까 종합공사의 자격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해영건설한테 도급이 갔지요. 갔을 때 자격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시기가 지난 다음에 남단으로 가서는 종합공사업으로, 토목공사업으로 바뀌었지요. 그 바뀐 이유는 무엇이지요?

북단은 그냥 시설물유지관리업인 법인이 해도 되고 그랬다가 갑자기 왜 남단 할 때는 종합공사업으로 바뀌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죄송합니다만 담당부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얘기하세요. 담당부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직함, 성명 얘기하시고요.

○토목부장 하현석 토목부장 하현석입니다.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 번 여러 군데서 스크린한 사안인데요.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에 복단을 발견할 당시에 이게 단순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종합건설공사로 봐서 토목공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남단 할 때는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토목으로 판단을 해서 발주를 하신 거잖아요.

○토목부장 하현석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토목으로 안 한 이유는 이런 것을 염두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에게 임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나요?

○토목부장 하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경찰에 고발되어서 수사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김길영 위원 고발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혐의 없음입니까?

○토목부장 하현석 네,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김길영 위원 어디서 했지요?

○토목부장 하현석 광수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부장님 말씀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토목공사업 그러니까 종건이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토목부장 하현석 제 견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종합건설공사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본교도 같은 식으로 발주가 돼서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급사 얘기한 거예요, 도급사. 그렇죠?

이제 하도급사, 하도급사는 어떻게 되나요?

○토목부장 하현석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토목부장 하현석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이게 통보사항입니다. 저희가 신고하거나 이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도급사 어디냐구요.

○토목부장 하현석 비엔지…….

○김길영 위원 복단은 어디예요, 하도급사가?

○토목부장 하현석 남북단이 같은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그 하도급 준 거는 생각하시기에, 대신 답변한다고 하시니까. 결국에는 특허 부분 때문에 하도급을 줘야 되는 거죠?

○토목부장 하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오전에 했던 자료들은 다 온 건가요, 심의 내용하고?

○토목부장 하현석 자료를 정리했는데요 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그건 보면 되구요.

이 성능개선공사 왜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토목부장 하현석 이 교량은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교량입니다. 2012년도에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가 파손돼서 노들길로 떨어지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명피해나 그런 건 없었지만 조사한 결과 그 외에도 한 20여 곳이 더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교량의 전체적인 슬래브를 교체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했고 구조물 슬래브 강도를 높이면, 여기가 DB18 교량 2등급입니다. 1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김길영 위원 결국에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아서 DB18에서 DB24, 말 그대로 2종에서 1종으로 등급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맞나요?

○토목부장 하현석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 공사 공정 중에 교량 바닥판을 프리캐스트, PC라고 그러죠. PC 바닥판으로 시공하는 공법을 적용했어요. 그렇죠? 특허공법이고, 맞죠?

○토목부장 하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특허 보유자는 효명이씨에스로 알고 있고, 그렇죠?

○토목부장 하현석 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시공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공법을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토목부장 하현석 저희가 슬래브를 교체함에 있어서 시공 과정이 현장에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슬래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래식 공법을 쓰는 거하고 그다음에 슬래브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고려했을 때 옆에 차량이 주행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품질 안전이나 관리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프리캐스트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공법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한 거죠?

○**토목부장 하현석** 세부공법 심의는 공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보다 주행하는,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PC로 제작해서 갖다 얹어서 공사를 빨리 더 안전하게 하겠다고 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목부장 하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관계직원에게) PPT 한번 올려주세요.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와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공정 관련해서 하도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디가 문제냐면 여기 지금 점선 표시 있죠? 여기 이 두 개. 처음부터 볼게요. 도급 혜영건설, 한신공영 맞고, 하도급 비엔지이엔씨, 비엔지이엔씨, 그렇죠?

재하도급, 지금 재하도급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하도급은 아시다시피 하도급 전체 공사금액의 20% 이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위원회 결과를 보니까 20% 이내가 아니라 지금 복단 같은 경우에는 60% 그다음에 남단 같은 경우에는 57%, 금액의 57%가 넘어요. 결국에는 재하도급을 줄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줄 수도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넘겨서 뒀단 말이에요. 그거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게 재하도급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로펌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관계직원에게) 혹시 로펌 자료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A법인 그다음에 B법인, C법인 다 이거는 재하도급이다, 불법이라고…….

(관계직원에게) PPT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리사 대표님, 도화엔지니어링 감리분야 김덕구 대표님 증인으로 나오시겠어요?

(답변대를 가리키며) 저쪽으로 오시겠어요, 제가 잘 안 보이니까?

대표님,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하도급사가 제품을 납품하려면 사전에 공장이나 제작장에 직접 가서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은 남단, 북단 각각 2일에 걸쳐서 현장 확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관계직원에게)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비엔지중공업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감사 자료에 보니까 사진들이 있는데 저기 동그라미 친 것들 보면 중공업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중공업은 이 일을 담당할 게 아니거든요. 감리 쪽에서 보실 때 제작공장이 비엔지이엔씨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엔지이엔씨가 돼야 되는데 아닌 것으로 정확하게 보여요. 저기 중공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셨어요? 현장 가셨는데 모르셨어요, 아예?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현장 실무자가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아는 사항은 이 특허공법인데 특허공법사에서 기술진하고 노무인력들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길영 위원 대표님은 밑에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특허 관련된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그동안에 보고를 받고 듣고 감사…….

○김길영 위원 그러면 현장 확인 갔던 사람이 중공업이라는 보고는 안 했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그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요…….

○김길영 위원 그러면 들으신 거잖아요. 여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네, 그 이후에도…….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아셨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같은…….

○김길영 위원 비엔지이엔씨가 아니고 비엔지중공업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 보면. 그렇죠?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제가 확인한 바는 없었는데요 나중에 보고받은 얘기로는 같은 대표였다,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자재를 납품해서 전문 기술자가 가서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계약서를 체크를 해요. 감사위원회에서도 계약서를 체크했는데 결국에는 도급자하고 하도급자, 만약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노동인력이 가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자재 납품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계약서 내용에도 그런 식으로 쓰여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 내용 자체에는 우리 건설공사 표준품셈 있죠, 그걸로 다 돼 있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다음에 각종 제경비까지 포함돼 있어서 이거는 건설공사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로펌 법무법인 세 군데에서 전부 다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걸 위반된다, 위반된다, 위반된다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하도급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렇죠?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네, 그렇습니다. 재하도급이라는 것은 원래 원도급자가 하도급 승인을, 저희들이 물론 확인하고 할 감리업무지만 확인을 못 했고요…….

○김길영 위원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네.

○김길영 위원 지금 감리로 39억 받으셨죠?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32억입니다. 공동 도급사 3개사 포함입니다.

○김길영 위원 3개사?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네.

○김길영 위원 32억 받으셨는데 그거 서류 페이지 한 장 확인하시는 게 어려웠었나요,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직원에게) 도화엔지니어링 홈페이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도화엔지니어링의 미션인데요 ‘자연과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인본, 화합, 창의’, 종이 한 장 보기가 힘들다는 말씀이 회사의 미션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죄송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 감리인원이 4명 정도, 최대가 4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남단, 북단 감리를 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조금은…….

○김길영 위원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지금 도화엔지니어링을 대표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이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불법행위를 방치했다, 제 생각입니다. 방치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근거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감리자의 시공자 하도급자에 대한 시정조치 미이행 등 하도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별점 부과 그다음에 제5항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대상자가 되세요. 그래서 도화엔지니어링 측 김덕구 대표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미비가 있었다 그런데 할 만큼은 다 한 것이라고…….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저희들은 최소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조

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남단 도급사 한신공영 이득복 상무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한신공영의 이득복 상무입니다.

○김길영 위원 상무님, 한신공영에서도 제작과정을 점검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 번 갔다
고 여기 감사위원회 보고서에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현장점검 갔을 때 실제 제작을 하도급사가 아닌 제3자 그것도 재
하도급사인 또 케이와이산업이 아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도 없는 비엔지건설산업이
제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감리사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저희가 현장 공장 검수 나갔을 때는 비엔지이엔씨, 현재
저희하고 하도급하고 있는 기술자가 거기서 제작을 하고 있었고요 그 사항을 저희가 3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케이와이산업은 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저희가 케이와이산업이라는 회사 자체를 몰랐습니다.

○김길영 위원 아, 그래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저희가 감사받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비엔지이엔씨가 다 잘못된 거다, 이건?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비엔지이엔씨에서 만약에 그런 서류를 가져왔으면 저희
가 그 서류를 검토해서 감리단에다 보고할 때 했을 것이고 감리단에서는 발주처에 보고
했을 겁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물어보면 되겠네요, 비엔지이엔씨한테 그런 업무를 보
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엔지건설산업이 하고 있는
지도 몰랐고, 케이와이산업도 모르고 결국에는 비엔지이엔씨에다가 그냥 하도급만 했을
뿐이고, 그렇죠?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네.

○김길영 위원 계약서상에는 그러면 자재납품 내용의 계약서만 있어요, 아니면 제가 아
까 얘기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관련된 계약서도 작성하셨어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실제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서, 통상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비엔지이엔씨입니다.

○김길영 위원 네, 맞습니다.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그래서 그쪽에서 모든 것을 다 100%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저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에 관련해서 저희가 감리단에 하도급 통보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 도화엔지니어링 측 잘못이라고 상무님은…….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도화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희가 서류 제출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게 발주처에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감리에 대한 잘못도 없고, 한신은 졌을 뿐이고 결국은 비엔지이엔씨 쪽으로 다 잘못이 있다고 몰고 가시는 거죠?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숙여서 무엇을 남길 수 있다든지 이익이 있다든지 제3의 뭔가 있다면 상관없는데 그게 없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것을 숨겨서 저희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네.

○김길영 위원 아무 이익도 없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대로 정확하게 일을 했다, 그렇죠?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네.

○김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혜영건설 대리출석하신 이영록 부장님 나와 보시겠어요?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용종합건설(주)토목사업부장 이영록 홍용종합건설의 이영록 부장입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똑같이 질문드릴게요.

현장점검 나갔을 때 실제 제작을 하도급사가 아닌 제3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도 없는 비엔지중공업이 제작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감리사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동일한가요, 한신공영하고?

○홍용종합건설(주)토목사업부장 이영록 네, 동일합니다.

○김길영 위원 그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용종합건설(주)토목사업부장 이영록 저희가 관련 규정에 있는 공장점검을 갔을 때 체크리스트에 있는 품질이라든가 이런 쪽만 주로 체크를 했고, 그리고 나와 있던 직원들도 비엔지이엔씨 명함을 주고 가서 공장을 확인시켜 주고 해서 비엔지이엔씨와 비엔지중

공업이 그런 관계에 있는지는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인지 못 하였는데 결국에는 도급자가 하도급 계약내용 거짓 통보한 행위는 지방계약법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정확하게 일을 진행한 것이다, 그렇죠?

○홍용종합건설(주)토목사업부장 이영록 네.

○김길영 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했고, 결국엔 다 비엔지이엔씨의 잘못이다, 그렇죠?

○홍용종합건설(주)토목사업부장 이영록 네.

○김길영 위원 들어가십시오.

비엔지이엔씨 김익현 대표님.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비엔지이엔씨 대표이사 김익현입니다.

○김길영 위원 대표님, 지금 한신공영도 그렇고, 두 업체 혜영건설하고 홍용종합건설 거기서도 다 비엔지이엔씨에서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러면 대표님은 일부러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아닙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저 두 업체한테 일부러 안 알리시고…….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다 알리셨어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저희들 감사를 받으면서 확인된 사실들인데 저희가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제작공장입니다.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하고 제조업은 조금 차이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건설업에서 제조업에 위탁생산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상주해서 그 공장을 이용해서 위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사전 하도급계약 신청서 할 때 제작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보면 공장등록증이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중공업하고 케이와이산업 공장등록증을 다 제출했지요.

○김길영 위원 그런데 결국 몰랐다고 하잖아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일단 하도급계약할 때 제작계획서에 공장등록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공장만 잠깐 빌려서 제작하셨다는 거죠?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공장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공업 대표이사도 저고 건설산업대표도 저고 해서 저희가 경영상 편의에 의해서 제조하고 전문건설공장을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약서 쓰실 필요도 없잖아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계약서를 쓰는 거는 어떤 회사관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길영 위원 그러면 법인 대 법인이면 그것은 말 그대로 하도급이라는 거잖아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꼭 하도급이라기보다도, 위탁생산이라기보다 직접생산의 개념인데 거기도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그런 것은 회사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북단의 재하도급인 비엔지중공업 있잖아요. 거기다 주신 거잖아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김길영 위원 남단은 비엔지건설산업, 그렇죠?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그것은 조금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비엔지건설산업 공장이었는데 그것을 케이와이산업이 인수를 한 것이고, 건설산업은 여기랑 전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한번 볼게요.

우리 대표님이 북단에 계약을 하신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흥용하고요?

○김길영 위원 네.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2019년도에 계약했는데 날짜까지는 자료를 한번, 잠시만요.

○김길영 위원 괜찮아요. 2019년이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흥용하고는 2018년 6월 28일에 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6월 28일?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재하도급 주셨다는 비엔지중공업 있잖아요. 2017년 7월 26일 폐업되어 있어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법인 폐업이 아니라 저희가 상황이 그래서 세무서의 직권폐업이라고 합니다. 거기엔 살아있고, 그러니까 영업행위 자체를…….

○김길영 위원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는 폐업 업체랑 어떻게 계약을 하셨지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계약이라는 것은 회사 내부적으로 저희가 중공업이라든

지 비엔지이엔씨, 비엔지건설산업이 다 같은 한 회사로 보기 때문에…….

○김길영 위원 이 내용들을 감사위원회에 다 말씀해 주셨던 건가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국 지금 로펌에서는 전부 다 불법 재하도급이다, 재재하도급이라고…….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그래서 저희도…….

○김길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그러면 항소하셨어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일단 그 부분만 그것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감사에 재심의 요청을 했고 그래서 법무법인의 자문서도 제출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결국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증인분들, 김익현 대표님 포함해서 전부 다 잘못은 없다, 그렇죠?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그런 것보다도 이게 건설 법리적인 잘못이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선례상 제작공장을 따로 두고서 많이들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인지를 못 했는데 어떻게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잘 맞춰서, 그리고 케이와이산업은 어떻게 들어온 거죠? 왜 들어왔죠? 어차피 대표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네.

○김길영 위원 케이와이산업은 거기다 왜 개입을 시켰느냐고요. 거기는 재재하도급이잖아요, 그렇죠?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서 건설산업은 없는 겁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문제없다?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문제보다도 저희가 인지를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그게 아니라 감사의 재심의라든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것은 언제 하셨지요? 감사가 끝난 다음에 하셨나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김길영 위원 그 날짜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감사 끝나고?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감사 끝나고 한 달 이내에 했기 때문에, 감사처분요청서 오고 한 달 이내에 저희가 직접 제출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기분을 통해서 제출은 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하도급사인 비엔지중공업은 2017년 7월 26일 폐업한 적이 없다?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아니요. 폐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세무 국세청에서…….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직권 폐업상태입니다.

○김길영 위원 비엔지건설산업은요, 똑같아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김길영 위원 왜 이게 다 똑같지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예전에 저희가 회사 경영하다가 세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공장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장 사용하거나 시설 그런 것은 전혀 문제없이 다 사용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김길영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PC판, 그렇죠? PC판 그것 제작한 것도 본인이 특허보유자고 자기는 잘못이 없고 도화에서는 잘 모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자기네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내용들이 뭐가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건가요?

감리는 보통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리사 현장 가실 때 암행어사처럼 나가지 않잖아요. 다 얘기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저런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들으신 적이 없나요, 김익현 증인 얘기하셨던 부분?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일단 인지를 못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시다.

위원님,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실무부서장이 감사도 받았고,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양해를…….

○김길영 위원 증인출석명단에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나상호 부사장이 감사도 받았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김길영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세요?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발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송도호 아니, 잠깐만요. 옆에 와서 조력 좀 해줘요.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옆에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김길영 위원 앉아 있으셨기 때문에 얘기 다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부사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조력해 주시면 되고, 하고 싶으신 얘기 그냥 대표님한테 하셔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말씀하셔도 돼요. 대표님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남단하고 북단하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하도급에서 생산하는 기술자하고 일위라든가 다 합해서 저희들은 인지를 못 했는데 사실 감사받으면서 이렇게 재하도급 내용까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길영 위원 결국 결론은…….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감리주체가 모른다는 게 사실 말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대표님 오래 하셨잖아요.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원칙은 사실 원도급자가 하도급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안 된다면 아까도 조금 아쉬웠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런 작업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인력이 최대 근무할 때가 4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남단, 북단 다 이렇게 공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김길영 위원 그런데 남단, 북단 전부 다 PC를 다 비엔지이엔씨가 만들었는데 관리하기 쉽잖아요, 한 곳에서 만들었는데.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현장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특히나 이게 제품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제작하는 상황이고요 현장도 지켜야 되니까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어쨌든 그게 자재 납품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결국은 그러면 건설 표준품셈에 따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공정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재하도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맞나요?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계약서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김길영 위원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결국 비엔지이엔씨하고 비엔지중공업 이게 다 김익현 대표님이 법인 대표로 되어 계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본인의 또 다른 법인회사 비엔지중공업으로 재하도급한 것은 본인의 또 다른 법인회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처음부

터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단 공사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3의 회사가 다 똑같죠. 회사가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재하도급사가 또 케이와이산업이고 실제 제작은 비엔지건설산업에서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회사 역시 북단 하도급 받으신 김익현 대표님의 회사이고, 그래서 이런 사실로 비춰봤을 때 북단 공사처럼 어차피 불법적인 본인 명의의 타 회사에 재하도급을 줄 것이라면 직접 그냥 하시지 그걸 왜 또 거기 중간에 다 회사를 넣어서 했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사실 이거는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김익현 대표는 비엔지이엔씨, 비엔지중공업, 비엔지건설산업,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케이와이산업 집어넣었는데 케이와이산업은 아예 면허도 없어요, 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면 면허도 없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다 하는 동안 우리 공공 발주청은 또 뭐 했냐는 거죠.

어쨌든 나머지 증인들이 또 필요하지만 불출석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불출석한 것만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사 있잖아요. PC 바닥판 공사 이게 모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덩어리로 처음부터 불법 하도급을 가지고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방치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사후 조치에 대해서 좀 여쭙볼게요. 이게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 이죠? 본부장님 이번에 오셨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8월 19일 자였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균열로 인해서 서울시 중요한 기반시설에 안전 문제가 대두된 것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이면에 공사계약에서 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계약서와 사실에 비추어서 이렇게 또 다른 재하도급에 가까운 현상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서울시 전체적으로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감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불법 재하도급뿐만 아니라 결국 제가 볼 때 이거는 공법에 대한 특허, 옛날 우리 업종에서 스펙 박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어쨌든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조치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남단 공사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입찰자격 제한하고 벌점 주고,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조치사항으로는…….

○김길영 위원 네, 조치사항. 감사결과에 과징금, 영업정지…….

그러면 업체별로 얘기하시겠어요? 도화에다는 어떤 조치를 했나요, 혹시? 그게 더 쉽겠죠, 얘기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리에 대해서요?

○김길영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책임…….

○김길영 위원 본부장님 잘 모르시니까, 담당자분 누구 없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시설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김길영 위원 네, 시설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조치를 했냐, 도화, 한신 이렇게 순서대로…….

○시설국장 권완택 시설국장 권완택입니다.

일반적인 감사위원회 처분에 대한 조치 계획은요 1차 처분을 저희 도기본에 통보를 했고요 도기본에서 이 도급사나 감리사나 하도급자들이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김길영 위원 전부 다?

○시설국장 권완택 네, 이의 신청을 해서 감사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돼 있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합니다. 심의를 다시 해서 그 처분 결과가 저희한테 다시 오면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사 같은 경우 벌점을 주라든가, 감리원이든 회사든 벌점을 주라고 하면 저희 도기본에서 벌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의 신청을 받아서 최종 벌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감사위원회 재심 청구 중으로 감사위원회의 2차 처분 심의를 거친 2차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과태료, 고발, 벌점 부과, 영업정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홀딩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멈춰 있다고.

○시설국장 권완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진행 중에 있다고. 그렇죠?

○시설국장 권완택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때 감사받을 때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됐었나요? 몇 명이 어떤 조치를 받았나요?

○시설국장 권완택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길영 위원 훈계?

○시설국장 권완택 네.

무슨 얘기냐 하면 감리원이 그런 절차에 대한 관리, 감리원 관리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김길영 위원 훈계받고 지금 도기본에 근무하고 계세요?

○시설국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도기본에 있어요?

○시설국장 권완택 아니,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요…….

○김길영 위원 도기본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국장 권완택 있다가 발령 나서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어쨌든 이번 사례를 도기본은 본보기로 삼으셔서,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하도급 관련해서 철저한 검증, 제작 납품, 우리가 제작 납품하고 공종을 구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계약서 보면 다 알아요, 뭘 내용인지. 그렇죠? 그래서 불법 재하도급이 완전히 뿌리 뽑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얘기한 것들 그래서 지금 과정이 진행되는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해당 처분 사항이 딱 나왔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한신공영 홈페이지 못 봤는데 한신공영 홈페이지 좀 올려줘 보세요.

○위원장 송도호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길영 위원 네, 마지막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한신공영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쓰여 있냐면 ‘완벽 품질의 초일류 건설회사’, 홈페이지 만들 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도화도 보여드렸고 한신도 그렇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증인으로 나오셨었는데 전부 다 모른다, 모르쇠로 다 하셨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그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이행 조치가 나오는 게 있으면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11.15) 해당 속기록

○김길영 위원 그래요, 서포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성산대교 저희 행감 때 도기본에서도 큰 실수를 한 게 나타났어요. 감사위원회에서도 나타났고,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또 발견 못 한 게 있어요. 제가 발견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그것은 오픈을 할 겁니다.

공종은 실장님도 다 아시죠? 공사의 어떤 종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의 주요 공종인 가교 설치와 바닥판 시공 방법에 관련해서 공법이 계속 변경이 됐어요. 그럼으로써 공사기간도 연장이 되고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를 즉 설명은 못 드리고 그냥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시계열 순으로 위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시행단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술제안이 처음에 일어났고 그다음 기본설계 했고 복단 공사했고 남단 했고, 시계열 순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맨 위 메뉴 말고 두 번째 칸 볼게요. 설계자가 기술제안을 2013년 9월에 했어요. 그래서 전 구간 가교 미설치로 하기로 했고 전 구간 PC바닥판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볼게요. 기본설계에서 전 구간 가교 미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로 바뀌었어요. PC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다음 볼게요. 북남단 공사 전 구간이 가교 설치로 바뀌었어요. 전 구간이 PC바닥판 설치로 바뀌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저렇게 바뀌면 PC 같은 경우에는 금액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공사 총비용에서 얼마 안 한다는 거예요, 저 공법에 대해서. 그런데 가교 설치하는 금액이 꽤 돼요. 그렇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남단의 최초 도급비가 163억이었어요. 최종 273억이 됐어요. 110억의 혈세가 낭비된 거예요,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한 건으로. 제가 지금 남단 얘기만 한 거예요. 북단은 최초가 168억, 최종 247억 그래서 약 80억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전부 다 해 보니까 한 190억, 189억 그 정도 혈세가 낭비된 거예요. 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자료 한번 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

고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 못 하실 것 같으면 옆에 계신 교량안전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자세한 내용은 교량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되고요. 왜 자꾸 바뀌었나요?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교량안전과장 조현석입니다.

일단 당초에 북단 접속교가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돼 있다가 바뀐 사유가 하부에 700mm 상수관도 있고 또한 구조상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공기 지연 우려가 있어서 도기본에서 시공사라든지 감리 등의 검토를 통해서 현장 타설에서 2018년 9월에 바닥판으로 설계변경을 했고요. 남단 접속교도 거의 비슷하지만 작업 여건, 구조상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품질관리라든지 주로 공기 지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공사부서에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바뀐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는 당초 계획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설계변경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정답이지만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충분치 못 해서 계속 변경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얘기는, 지금 이 설계자가 평화엔지니어링 맞죠?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평화엔지니어링이 기술 제안한 게 그러면 엉망이라는 얘기네요?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제가 구체적으로…….

○김길영 위원 내용은 잘 모르시고?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왜냐하면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안했던 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김길영 위원 오케이. 그렇게 해서 189억의 혈세를 썼어요. 만약에 과장님 집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처음에 1,0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두 배로 뛰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세요?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그것은…….

○김길영 위원 자기 집 일처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실장님, 직원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189억 혈세, 그렇죠? 그러면 189억 이렇게 혈세 쓴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초반에 아마도 기술 제안 당시에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한 것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지장물이나 현장 상황들을 고려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적하신 것처럼 낭비적인 요소가 혹시 있는지 확인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길영 위원** 이게 기술 제안을 받아서 그 설계사를 선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물론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인 설계가 현장에 적용될 때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지장물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저러한 증액요인도 분명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A로 하기로 했다가 B로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A로 갔다 B로 갔다 다시 A로 가는 건, 지금 5G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 말씀 맞아요, 혁신적으로 A에서 B로 간다, 오케이. 그런데 A에서 B로 갔다 B에서 A+로 갔다가 A랑 비슷한 A-로 갔다가 이런 거예요, 지금 저게. 저런 건 잘못된 거죠. 저런 저렇게 하신 분 엄하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다 똑같죠.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성산대교 같은 경우에 영업정지부터 시작해서 별점, 과태료 다 나가고 있어요, 도기본에서 한 한신공영하고 지금.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어쨌든 이 부분은 도기본하고 지금 주신 말씀들을 한번 더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거 꼭 하셔서, 이게 결국에는 업무태만이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생각지 않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공사 하면 설계 좀 변경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영동대로 지하도 설계변경해서 190억 인가 또 썼어요.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얘기를 슬슬 할 건데 그건 국토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강압적으로 모 컨소시엄한테 얘기해서, 하여튼 그것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찾아낸 건데 그 내용도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되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균열이 생겼잖아요, 그걸 보수를 했어, 그다음에 감리 쪽에 보고도 안 해.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안전사고 일어나면 또 안전총괄실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민심을 대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제 임무잖아요, 의무이고.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셔서 다시는 이

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붙임 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11.8) 해당 속기록(이상욱 위원 질의답변 내용)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다가 너무하다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걸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이어갈 건데요. 사실 행감 자료에도 그렇지만 오늘 주요 업무보고 하신 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3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수, 분뇨, 음폐수 해서 탄천센터하고 서남센터 76, 163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맞는 자료예요?

왼쪽 보세요. 2페이지 주요 관리·운영시설 보면 하수처리 253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2개 합치면 253만이 아니라 239만으로 나오죠. 또 위에 그림을 보시면 탄천은 90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에는 76만으로 되어 있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상욱 위원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시설용량이 있고요 실제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은 270만이고 총 평균 유입한 양이 253만입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이거 말고 물재생센터 거 보면요 2개 합친 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난지하고 중랑 합친 거 하수처리로 해가지고요. 자료를 잘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상임위가 아니라 게다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1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변감성도시과랑 물국에서 해 주신 부분들은 자료들이 괜찮아요. 그런데 10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랑물재생센터. 1번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협잡물 처리용역 해서 15억 5,000만 원 정도 계약이죠. 그런데 공고일, 입찰일, 계약일 다 똑같습니다. 2020년 1월 6일로요, 2회 유찰되었다고 하는데도요. 그 밑에도 죽 한번 보세요. 3개 일이 다 똑같아요, 중랑물재생센터 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년에 어떻게 제출하셨나. 작년 거 는요 계약일, 입찰일, 공고일이 같은 사업이랑 같은 금액이랑 똑같은 건데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번 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중랑센터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윤창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이상욱 위원 아니, 날짜가 다 같고요. 작년에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날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2개가 다르냐고요, 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똑같은 계약건을 가지고 쓴 건데.

○중량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그거는 아마 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착오죠? 이런 착오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야 돼요?

○중량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죄송합니다.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나중에 보고가 아니라 이러지 마시라고요. 감사 자료는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서 그러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데이터로 해서 감사하는데 이거 가공했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죠? 단순 착오가 아니라 가공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량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아무튼 가공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이상욱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중량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시정해 주세요.

○중량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중량은 들어가시고요.

다음 1106페이지 난지물재생센터예요. 여기도 보니까 공고일이 없이 진행된 것들이 있어요. 입찰일, 계약일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공고일이 없이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봤어요. 왜 그럴까, 뭐가 다르지 해서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59번, 78번, 105번 보면 같은 업체에서 3개의 수의계약을, 최근 3년간 자료에 보면 3개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보면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수의계약 했던 회사 현황에 보면 또 없어요, 이 회사가. 왜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건?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 회사에 관련돼서 뭐가 있는지. 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건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슬러지 계면측정기 운영현황 조사 보고 해서 2020년 6월 26일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를 보시면 현장 및 사무실 직원 대상 조사결과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혹시 화면 안 나오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쓰여 있냐면 계면측정기 작동동력인 컴프

해서 고장이 잦고 겨울철 측정기 체인동결이 잦음, 신속한 대처 어려움, 근무자 직접측정보다 정확도 및 신뢰도 떨어짐, 그렇게 다양하게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요. 게다가 야간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것도 현장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여기에 담은 내용이에요.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 부분공개 자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도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이거 지금 직원들이 얘기하신 거는 기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의견들을 제출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럼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됐나 해서 또 살펴봤어요. 안 됐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난 7년간 60억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랑 진행을 했어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시행령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이렇게 보면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대체대용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체대용품이 없나 또 살펴봤어요. 그런데 중앙센터에서도 사실 여기랑 처음에 하다가 바꾸셨더라고요. 대체대용품이 있다는 거예요. 필로 바꿨는지 거기까지는 자세히 조사를 못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현장 직원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이 이루어졌고 또 오늘 자료 7페이지 보세요, 물재생센터에서 보내주신 거. 난지 해서 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비접촉식 광센서 계면측정기 12대 설치 해서 4억 8,000만 원, 그렇죠? 이게 이거예요. 또 설치하신 거예요,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이한 특허가 있는가 뭔가 해서 봤어요. 살펴봤더니 제시된 특허는 2007년에 만들어진 비접촉식 특허였더라고요. 그리고 인용한 연구자료는 2009년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2009년이면 벌써 10년 넘었죠.

국장님, 2009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2019년?

○이상욱 위원 2009년. 2009년이면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해였는지 기억하세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건 잘…….

○이상욱 위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지요 2009년에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아이폰3 들어오면서. 그러고 나서 지금 벌써 십몇 년이 흘렀죠. 기술의 발전이 아주 빠르게 됐고 아주 이제는 컴퓨터가 됐죠,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기술의 발전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2009년에 있었던 연구자료를 토대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대체대용품이 있는데도 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 좀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

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세세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자료의 부족에서 시작된 탐구였어요. 게다가 이런 문제점까지 있다는 거는 다른 수의계약들도 더 살펴보면 뭔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앞으로 상임위 하면서 꾸준히 짚을 생각이니까요 국장님께서도 잘 전수조사하셔서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기술의 발전에 우리가 저해되지 않고 늘 적용시키는 스마트 물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은 물재생센터의 주민협의회 전문가 구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번 내용인데요 2018년도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에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못해서 지적이 한 번 됐었던 사례입니다.

해당 조례 제16조를 보시면요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협의회에는 해당 구청장, 구의회 의장을 포함해서 전문가 2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죠. 자료를 봤더니 지난 3년간 주민협의회 전문가 2명을 포함해서 구성한 곳은 중랑물재생센터 한 곳이고 나머지 3개 센터는 조례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운영계획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센터장이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공단 이사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공단 이사장님 소관에서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지금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물재생센터의 주민협의회에 전문가가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희는 지금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상욱 위원** 아는데?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실무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실 센터 내 주민협의회에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전문가분들 추천이라든지 해도 해당 전문가분들께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서 못 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문

제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해당 관련해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주민대표가 전문가 2명을 추천하기 어렵다면 주민협의회 운영 시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요. 주민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시장이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개정을 준비해 봐도 될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면 참여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정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는 한데 다음 질의를 이어갈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9번인데요 약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4개 물재생센터에서 하수처리약품 투입량을 살펴보면 2019년에 4,050톤, 2020년에 4,460톤, 2021년에 4,890톤 해서 매년 400여 톤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이 증가하는 이유는 저희가 방류 수질 강화에 따라서 총인처리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1단계 총인처리시설을 서남, 중랑, 탄천은 완료를 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질개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약품 투입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약품은 저장을 어떻게 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약품은 액상 경우에는 3~4일 정도 보관하고요 그다음에 액상이 아닌 기타…….

○**이상욱 위원** 어디에 보관을 해요,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설별로 액상인 경우에는 탱크에 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상욱 위원** 그냥 실온에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서울시 물연구원 자료를 봤더니 특히 여기서 쓰는 화학약품 같은 경우는 20℃ 이하가 최적의 온도로 되어 있고요 그거를 넘어서거나 그러면 기화가 발

생돼서 약품이 증발되는 거죠. 기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냉각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든지 아니면 보관하는 장소를 최적 온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여름에 요새 무덥죠, 기후변화로. 40℃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말씀하신 것처럼 약품마다 저장온도는 정해져 있어서요 그 기준은…….

○이상욱 위원 그래서 차아염소산나트륨 예를 들어 볼게요. 15% 정도 증발하면, 2020년 1월의 경우 4개 센터에서 사용하는 차아염소산나트륨량이 300톤가량 되는 걸로 계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300톤에 15%면 45톤 정도 됩니다. 이 45톤이라면 연간 금액으로 생각해서 톤당 19만 원 정도의 약품가격을 생각하면 45톤, 9,0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연간 기화돼서 날아갈 수 있다고 그냥 단순히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연구자료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끼는 행정을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실제로 11℃에서 20℃ 사이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기술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특정 공간에 에어컨을 놔두더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셔서 아끼면 좋은 거니까 이거에 대한 개선사항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4개 센터 같이 미팅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장현 소장님, 한번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계면측정기 있잖아요. 올해도 계약했죠?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계약 안 했어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네.

○위원장 송도호 그때 5명이 투표로 해서 4 대 1인가로 그 회사 결정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원들 5명이 누구예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 부분 회의 자료하고, 그날 결정할 수 있는 회의 했을 거 아니에요. 5명이 투표도 했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2시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왜 제

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4 대 1인가로 그 회사가 또 땀어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위원장님,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도호 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우선 11월 3일 일상감사 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중에 특정제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됐다 할지라도 향후 동종업계의 업체가 있으니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를 먼저 하고…….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후 문제이고, 일상감사팀에서 그렇게 냈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내용 그 자료하고 그날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던 부분하고 위원 5명 명단하고 그걸 2시까지 가지고 오세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지적했던 게 사실 연구자료나 특허 보면 제한경쟁입찰로 붙일 수 있는 기간은 이미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제한경쟁입찰로 계속 되었을까 하고 생각한 거거든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욱 위원 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우선 계면측정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비접촉식과 접촉식이 있는데 위원장님이나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면측정기는 비접촉식으로 환경공단과 R&D 사업을 하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꾸준히 2000년도나 제가 오기 전부터 그게 되어 있었는데…….

○이상욱 위원 제가 자료 알고 있어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잖아요. 비접촉식, 초음파식 또 하나 있지요. 그런데 초음파식이 과거에 그랬었던 것은 특별히 없이 그냥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저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시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것을 적용을 못 시키나이거죠. 기술 발전된 걸 왜 자꾸 이렇게 지양하고…….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그래서 이쪽 전문가들한테 저희도 많이 자문을 했습니다만 우선 비접촉식 같은 경우는 광센서 방식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접촉식 방식은 이물질 특히 슬러지 계면이라는 것은 접촉을 하면 이게 자꾸 달라붙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비접촉식 방식도 똑같아요. 어차피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뒤에 싸고 있다고 해서 비접촉식으로 인정해 준 거지 않습니까. 초음파식도 똑같죠. 뒤에 싸고 있으면 똑같이 비접촉식 초음파 방식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정리하시고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더 보시고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두 분이 하실 건데 먼저 이상욱 위원님 하세요.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게끔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셔서 저에게 건네 온 자료를 봤는데요. 슬러지 계면측정기 선정 관련 자료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해서 2022년 9월 21일 위원회 해서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고 또 한숨이 나왔어요. 저한테 11월 4일 제출하신 자료 보면요, 국장님 여기 보시면 2022년 9월 21일 계면측정기 제조 구매 설치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해서 다섯 분 명단이 있는데 달라요, 이거랑.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때 왜 이걸 주시고 지금은 또 이걸, 어떤 게 맞는 거고, 왜 계속 의구심이 들게 만드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쨌든 이게 방침서에 다 있는 내용인데요 다르다는 얘기신가요?

○**이상욱 위원** (관계직원에게) 이것 국장님한테 드려보세요.

보세요, 다르잖아요. 날짜가 같아요. 제가 어떤 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게 2022년 9월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이게 22가 아니라 2020년 9월, 약간 오기된 것 같다고 그러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데 명단 자체를 다른 걸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상욱 위원** 제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했던 부분이 자료에 대한 오류들이 계속 있다는 걸 누차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온 자료가 또 다르니까 계속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다시 한번…….

○**이상욱 위원** 국장님, 이거 면밀히 잘 살펴보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청구를 할지 말지도.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

님께서도 더 자세하게 찾으셔서 따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별도로 이 자료에 대해서…….

○이상욱 위원 자료 이렇게 오지 않게 해 주세요, 절대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이거 비교해 보는 것만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처음에 자료 받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별도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